

발 간 등 록 번 호

11-1192000-000315-14



항만시설 사용 및 항만운송사업

질의회신집

2015. 1.



<일러두기>

본 책자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 부에서 항만시설 사용 및 항만 운송(관련)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회신한 주요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법령 개정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하므로 업무처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특정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현행 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1편 항만시설 사용료

제1장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자)	3
1. 항만시설사용료의 납부 의무자	5
2. 항만시설사용료 납부 책임소재	5
3. 선박임의경매사건에서 사용료 납부 의무자	6
4. 항만시설사용료 체납시 국제 해운대리점에 청구 가능 여부	7
5. 화물입출항료 납부주체	8
6. 해운대리점이 부도난 경우 항만시설사용료 납부 의무자	9
7. 등록말소 준설선도 항만시설사용료 납부대상인지 여부	10
8. 해운대리점이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대리 신청·허가를 득한 경우 사용료 체납 관련 납부 의무자	10
제2장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징수	13
1. 수역점용료 징수 대상인지 여부	15
2. 항만내 운송 화물의 화물입출항료 징수 여부	15
3. 국가귀속 임항창고의 사용료 부과	16
4. 내항선을 이용하여 모선의 외항화물을 양적하하는 경우, 외항 및 내항 화물입출항료를 각각 납부하는지 여부	17
5. 컨테이너조작장(CFS)의 사용료 적용 방안	18
6. 사유부두에서 정박료가 징수되는 이유	19
7. 선박과 운송차량간 송유관 이용 액체화물의 사용료 적용 방법	21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용료 등 의제	22
9. 국가 비귀속시설의 항만시설사용료 부과 시점	23
10. 한 선박이 타 선박의 화물칸에 적재, 입항하는 경우 사용료 부과 여부	24
11. 대형부선에 소형부선을 접안료 및 정박료 등 부과	25
12. 국가귀속 항만부지 운영건물에 대한 사용료 산정기준과 공시지가의 적용기준 차이 등	26
13. 국가비귀속 부두에서 접안료 징수 가능 여부	27
14. 화물 입출항료 신고 주체 등	27

제3장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29

1. 항만시설관리권 양수자의 다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가능여부31
2. 수리 목적으로 입항한 선박의 사용료 면제 여부31
3. 48시간을 초과한 통과선박의 사용료 면제여부33
4. TOC부두 사용에 따른 정박료 면제여부34
5. 국가 비귀속 계류시설 부족으로 대기 시 사용료 면제35
6. '선박결함수리'에 대한 해석여부 등36
7. 항만시설사용료 면제대상 건물 일부를 제3자에게 유상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 대상 여부37
8. 수리 또는 청소 등의 사유로 항계 밖으로 출항 시 당해 선박의 항차 분리 여부 등37
9. 대기선박 등의 접안료 및 정박 면제 범위38
10. 내항선의 범주 및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율 적용 여부39
11. 건조 직후 선박을 일반부두에 접안 후 공선으로 출항하는 경우 선박입출항료 감면 여부40

제4장 비관리청항만공사 관련 등 43

1. 비관리청 항만공사(유지보수공사) 투자비 보전 가능 여부45
2. 국가귀속 항만시설 총사업비 정산45
3. 비관리청 투자비보전에 따른 대납경비 수수료 지급46
4. 항만구역내 야적장 전대사용의 범위47
5.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의 이전48
6.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관련 수역점용료 부과시점49
7.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항만부지에 선박 잔해물을 일시적으로 적재한 경우 위법 여부50
8.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 및 승인 시 부과할 사용료(수수료)의 종류51
9. 국가 비귀속 시설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 가능 여부52
10. 자가설치한 시설물의 타인에게 임대 가능 여부 등53
11.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된 여객선터미널의 여객터미널 이용료가 총사업비 보전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54
12.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경사물양장에 접안하는 부두에 대해서도 시설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55
13.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후 잔존 투자비에 대한 보상방법 등56

제1장 항만하역업	61
1.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 중 해당시설에 근저당 설정 시 동 채권가액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63
2. 본인의 소유장비로 본인의 화물을 하역하는 경우	64
3. 자가하역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예시	64
4. 타인의 수요에 응하는 행위인지 여부	67
5. 불개항 부두 등에서 화물을 직접 공급한 경우 노조비 지불 여부	68
6. 무역항 이외 지역에서 직접 고용한 인부로 작업 가능 여부	69
7. 경쟁입찰을 통한 하역요금 절감 가능에도 불구하고 항만하역요금표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70
8. 항만하역사업 최초 등록사항 등 변동 시 조치 필요사항	71
9. 화주가 자가부두에서 하역 시 직접 하역이 가능한지 여부	71
10. 연안항에서 하역회사에서 하역 하지 않는 경우 등에도 하역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72
11. 항만하역요금 신고대상 항만시설의 별도 고시 행위 필요성 및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범위	73
12. 어선으로부터 어획물 하역작업 시 항운노조를 통하여 해야하는지 여부	74
13.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고시 후 시행한 항만시설의 항만하역요금 신고대상 여부	75
14. 자사생산 제품의 판매를 위해 자가하역하는 경우 하역업 등록 여부	76
15. 한정하역업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77
16. 준설토를 부선에 적재하여 예인선으로 끌고 가는 경우 항만운송사업 대상인지 여부	78
17. 항만하역사업자가 자기가 수탁한 항만하역업무를 타 사업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 하도급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79
18. 「폐기물관리법」 상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업 등록 여부	81
19. 차량 운임 외에 별도의 노조비 징수가 정당한지 여부	81

제2장 검수·검량·감정사	83
1. 선하증권 발급이 검량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85
2. 검수사등의 자격 등록 주체 및 보조검수사등의 업무범위	85
3. 정규직 아닌 검수사 확보가 등록기준 위반인지 여부	86
4. 1인이 감정·검량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경우 자격증 보유인원 산정방법	87
5. 외국계 회사가 검량·감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	88
6. 감정사 및 감정평가사 업무 범위	89

제3편 **항만운송관련사업**

제1장 항만용역업	93
1. 타 항만에서 사업 등록없이 지사설립 후 용역제공 가능여부	95
2. 항만구역을 벗어난 해상간 작업인부 운송	96
3. 항만용역업 중 화물고정업만 등록 가능여부	97
4. 통선의 법률적 의미 및 관련규정의 적용	97
5. 항만용역업의 종합등록제를 완화하여 개별등록 가능 여부	98
6. 공사작업선의 항만용역업(통선업) 등록대상 여부	99
7. 통선업의 범위 등	100
8. 기타선(통선)으로 선착장에서 준설선까지 공사인부 수송 시 통선업 등록 필요 여부	102
9. 항만운송관련사업의 「항만운송사업법」 적용 여부 등	103
10. 통선으로 방파제공사 바지선과 육지간의 연락 중계 가능 여부	104
11. 대표자 변경 시 상호 변경이 없다면 등록증 변경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104
12. 항만용역업 등록업체가 용역비를 지불하고 미등록 물품공급업 신고업체에게 업무 대행 가능 여부	105
13.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업체가 등록 외 장비로 사업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106
14. 항만용역업의 등록기준 이외 분야에 대한 제한 가능여부 등	108
15. 통선을 이용한 공공시설물 등 점검·보수인원 수송 가능 여부	109
16. 어장관리선으로 통선이 사용가능한지 여부	110

17. 급유선 또는 급수선이 없어도 항만용역업 영위 가능 여부	111
18. 통선으로 작업인부나 물자 등 운송 가능 여부	112

제2장 선박급유업 113

1. 타 업체의 급유장비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선박으로 선박급유 가능 여부 .	115
2. 등록장비는 해당 항만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	116
3. 육상 이동 주유차를 이용한 항만내 연료유 공급	117
4. 선박급유업의 등록기준	118
5. 탱크로리를 이용한 선박연료유 공급 가능 여부	118
6. 유조차량을 이용한 선박급유의 적법성 여부	119
7. 윤활유의 제품적 성격과 탱크로리로 급유 가능 여부	120
8. 자사선박에 연료유 공급 시 선박급유업 등록 필요 여부	121
9. 선박급유업을 등록한 타 업체를 통한 선박연료유 공급 가능 여부	122
10. 임차한 탱크로리를 이용한 선박급유 가능 여부	123
11. 선박급유업체가 타 지역에서 연료유 수급 후 영업구역내에서 판매 가능 여부	124
12. 선박급유업 등록을 하고 계약을 맺은 탱크로리로 선박급유 가능 여부	125
13. 선박급유업자가 운송업자와 계약을 맺어 차량에 의한 유류수송 위탁 가능 여부	126
14. 선박급유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탁에 의한 탱크로리로 선박급유 가능 여부	127
15. 탱크로리를 이용한 선박용 연료유 공급 가능 여부	128
16. 정박 중인 선박에 탱크로리로 윤활유 공급 시 「항만운송사업법」 등록대상 여부 .	129
17. 선박급유업 최초 등록 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	130
18. 바지선에 탱크로리를 탑재하여 윤활유 공급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130

제3장 물품공급업 및 컨테이너수리업 133

1. 단순히 차량을 이용하여 정박 중인 선박에 물건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	135
2. 물품공급업 영위 관련 법령위반 여부	136
3. 육상에서 '컨' 화물 고정작업을 하는 경우 등록 여부	137
4. 물품공급업자가 내·외국 외항선원을 유·무상으로 항만 밖으로 수송 가능 여부 .	138

[부록] 대법원 판례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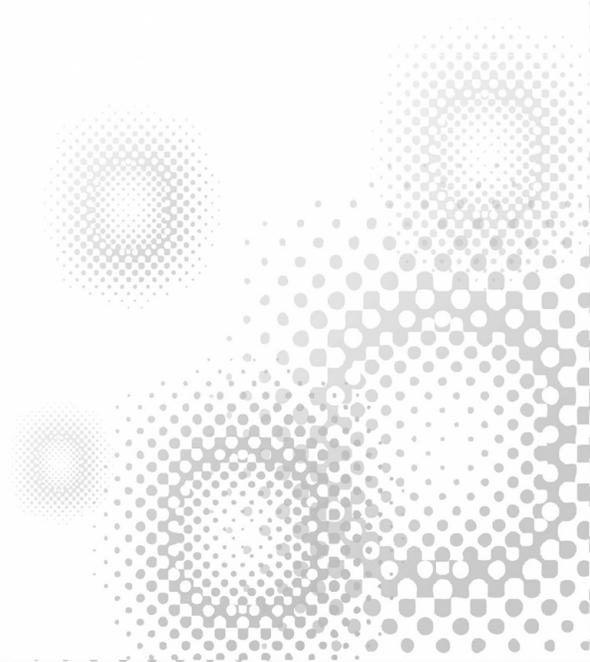
제1편

항만시설 사용료



제1장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자)



① 항만시설사용료의 납부 의무자

[질의]

☒ '05. 8. 22, 대산지방청

- 실제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주를 대리하여 선박대리점 명의로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거나 사용신고를 한 경우
 - 항만시설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자는 피허가(신고)자인 선박(국내해운)대리점인지 아니면 항만시설을 실제로 사용한 선주인지 여부

[회신]

☒ '05. 10. 24, 항만물류과-1401

-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이며,
 - 이 경우 선박관련 사용료는 대리점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개별적 청구가 가능하고, 화물입출항료는 화주에게 직접 청구가 가능함

② 항만시설사용료 납부 책임소재

[질의]

☒ '06. 2. 7, 김○○

- 「항만법」 제27조 관련 항만시설사용료 납부 의무자를 항만시설사용허가 신청인(선사, 대리점)으로 규정한 근거와 이유
- 선박압류시 대리점에서 압류선박에 대하여 대리점 포기를 하면 관할 해양수산청에서 승인하여 주는지 여부



[회신]

☒ '06. 2. 23, 항만물류과-236

- 「항만법」 제27조제1항은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를 동일하게 봄
- 선사와 대리점의 관계는 해운법령에 의거 선사와의 계약에 따라 계약내용을 대리하는 내부자관계로 보이므로 대리점 포기를 항만법령에 의한 항만시설운영자 인 지방해양수산청이 승인할 사항은 아니며, 선사와의 계약관계의 파기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③

선박임의경매사건에서 사용료 납부 의무자

[질의]

☒ '06. 9. 21, 장○○

- 감수보전 조치중인 선박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항만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당사가 선주를 대신하여 항만시설사용허가 신청을 하였다면 해당 항만시설사용료는 누가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 선박의 경매 후 선박 우선특권에 의거 채권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도 미회수된 항만시설사용료가 있다면 처리방법은

[회신]

☒ '06. 10. 4, 항만물류과-1258

-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경매여부와 관계없이 항만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 사용료는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항만시설 사용신고를 한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 이 경우 선박관련 사용료(접안료, 정박료 등)는 대리점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개별적 청구가 가능함
 - 특히, 상기 관련 경매진행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경락 이후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자가 항만시설사용료 납부의무를 지게 됨
- 이미 부과된 항만시설사용료는 상법 제861조(선박우선평권있는 채권)에 의거 우선 확보가능하며, 만약 배당금액이 사용료 총액에 미달될 경우 관리청은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한 자(선사 또는 대리점)에게 별도의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됨

④

항만시설사용료 체납시 국제 해운대리점에 청구 가능 여부

[질의]

☒ '07. 5. 4, 마산지방청

- 국제해운대리점과 선박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적선의 마산항내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던 국내해운대리점이 사용료를 체납하고 폐업(잠적)한 경우,
 - 국제해운대리점에 대해서도 항만시설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07. 5. 15, 물류제도팀-622

- 국제해운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여 선박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던 국내해운대리



점이 폐업한 경우,

- 관리감독의 책임을 소홀히 한 국제해운대리점에게도 체납된 사용료를 청구하고,
- 실제 항만시설을 사용한 선사에 대해서도 사용료 독촉, 선박우선평권 관련 채권보전 등 관련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⑤ 화물입출항료 납부주체

[질의]

☒ '08. 10, 김○○

- 화물입출항료 납부주체는 누구인지

[회신]

☒ '08. 10. 16, 항만유통과

- 「항만법」 제32조 제1항 및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제7조에 따라 항만시설사용신고서를 지방해양항만청에게 제출한 자가 화물입출항료 납부주체임
- 참고로, 화물입출항료는 동 규정 별표1에 따라 수역시설, 임항교통시설, 화물보관처리시설 중 화물장치장 사용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의 일부로서, 특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항만시설사용신고를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신고하는 자를 납부주체로 보고 있음



⑥ 해운대리점이 부도난 경우 항만시설사용료 납부 의무자

[질의]

☞ '10. 11. 29, 박○

- 중앙 해운대리점이 부도가 난 경우 항만시설사용료(선박입출항료, 정박료 및 접안료) 납부의무자에 대한 질의

[회신]

☞ '10. 12. 6, 항만운영과-4051

- 해운대리점은 외국선사의 선박과 내국선사의 현지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선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업종을 등록하고 있으며, 선박의 항만입출항과 관련한 국내 외적 관행 및 계약에 따라 선사의 항만시설사용 등 업무에 대해 사실상 선사의 지위를 행사함
 - * 해운대리점의 「항만법」 제30조와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업무는 단순한 허가신청의 대리에 머무르지 않고 선사가 항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용역을 제공하는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것에 해당됨.
- 따라서, 국제 해운대리점의 도산에 따른 비용제공 주체 여부는 내부적 관계에서 해결할 사항으로 항만법령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자를 사용료 납부의무자로 볼 수 밖에 없음



⑦

등록말소 준설선도 항만시설사용료 납부대상인지 여부

[질의]

☞ '11. 12. 조○○

- 선박등록이 말소된 준설선은 선박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데 항만시설사용료 (월정료) 납부 대상인지 여부

[회신]

☞ '11. 12. 19, 항만운영과

- 준설선의 경우에는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별표1 규정에 따라 접안료 징수대상인 항내운항선에 해당됨
 - 귀하가 질의하신 준설선은 「선박법」 제26조 제7호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의한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 「선박법」 중 일부조항만을 적용 제외한 것이므로 현행대로 사용료 납부대상 선박임

⑧

해운대리점이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대리 신청·허가를 득한 경우 사용료 체납 관련 납부 의무자

[질의]

☞ '14. 3. 21, 노○○

- 해운대리점이 선주 및 화주를 대신하여 선박 입출항을 위한 항만시설사용허가 (신고) 등을 대리 신청하고 허가(신고수리)를 득한 경우 항만시설사용료 체납 관련 납부 의무자는?



[회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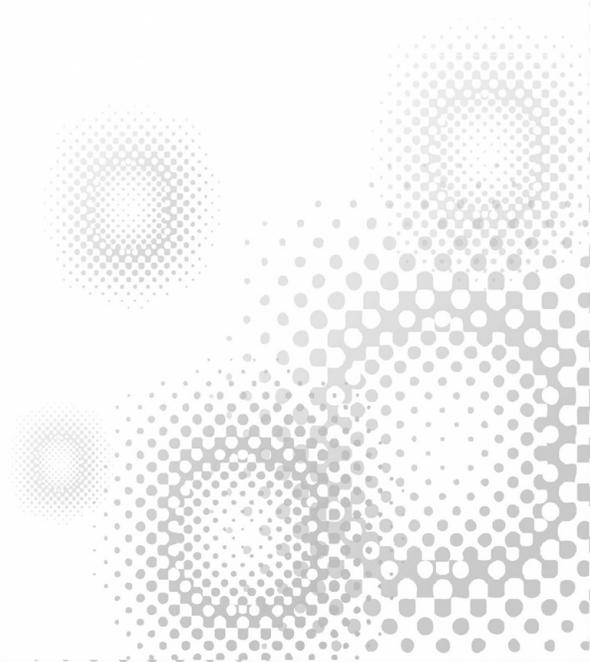
* '14. 4. 3, 항만운영과-1216

- 「항만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가 항만 시설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하면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항만시설사용료 납부 의무자는 직접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대리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주 및 화주도 납부의 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제2장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징수



① 수역점용료 징수 대상인지 여부

[질의]

☞ '05. 6. 20, 대산지방청

- 30만DWT급 돌핀 및 항만부지(17만㎡)의 조성을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국가비귀속 대상) 시행허가시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 부과·징수, 항만시설사용허가 및 수역점용료 부과·징수해야 하는 지 여부

[회신]

☞ '05. 9. 29, 항만물류과-1258

- 본 건은 부지조성 및 원시 취득목적을 위한 매립공사로서 「항만법 시행령」 제 17조제2항제1호별표3의 비고1에 의거 국가비귀속 검토의 전제가 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 면허수수료, 항만시설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의 전제가 되는 공유수면매립법령상 매립면허와 항만법령상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와 의 적정여부 등 검토 후 다시 질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② 항만내 운송 화물의 화물입출항료 징수 여부

[질의]

☞ '05. 8. 22, 대산지방청

- 항만운항(부선)을 제외한 화물선(항간운항 급유선 포함)에 의하여 동일 항만구역내에서 운송(하역,급유)하는 화물이 화물입출항료 대상인지 여부



[회신]

☒ '05. 9. 26, 항만물류과-1244

○ 징수대상이 아님

- 선박급유업자가 선박용 연료유를 선박급유 목적으로 300톤이상의 급유선으로 내항화물 운송하였다면 선박급유업 등록항만에 최초 입항시에는 화물입출항료를 납부하여야 함
- 동일 항만구역에서 선박급유업의 대상인 선박용연료유와 하역업의 대상인 적치장소의 이전을 하는 화물은 무역항사용료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이 아니므로 화물입출항료가 발생되지는 않음
- 다만, 급유를 위한 내항화물운송, 화물의 항만내 이동을 위한 항만운송을 위한 선박 등의 운송수단은 개별법령, 항만운송업무처리지침 및 내항해운의면허등관리요령 등 지침에서 정한 등록조건에 적합하여야 함

③ 국가귀속 임항창고의 사용료 부과

[질의]

☒ '06. 8. 18, 포항지방청

-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축조하여 국가귀속한 임항창고의 무상사용기간 중 사용료를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부과함이 적정한지 여부
- 국가귀속된 임항창고에 대하여 무상사용기간 종료 이후 동 시설을 항만시설사용허가에 의하여 사용할 경우, 동 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국유재산법」에 의거 부과함이 적정한지 여부
- 국유 임항창고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비관리청이 투자할 경우, 동 투자비보전의 적용 법률



[회신]

☒ '06. 10. 31, 항만물류과-1414

- 동 창고가 항만구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로서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한 창고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사용료는 창고 및 야적장의 전용사용료를 적용
- 무상사용기간 종료 후 동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와 관련, 동 창고가 야적장부지에 설치되어 단순한 화물보관용의 일반창고인 점을 감안할 때, 상기 규정에서 정한 사용료 중 창고 및 야적장의 전용사용료를 적용
- 국가귀속되어 창고사용료를 부과중인 창고시설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위하여 비관리청이 재투자를 한 경우,
 - 공사에 소요된 투자비 보전을 위한 무상사용기간 산정시에도 유지보수공사 준공당시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상기 규정의 창고 및 야적장의 전용사용료를 적용

④

내항선을 이용하여 모선의 외항화물을 양적하하는 경우, 외항 및 내항 화물입출항료를 각각 납부하는지 여부

[질의]

☒ '06. 12. 6, 황○○

- 울산항에서 수출입 화물을 싣고 외항선박이 입항하였으나,
 - 선박크기 및 부두수심으로 인해 직접 접안하여 하역하지 못하고 내항선박을 이용하여 모선의 외항화물을 양적하 하는 경우 외항 화물료 및 내항 화물료를 각각 납부하는지 여부



[회신]

☒ '06. 12. 11, 항만물류과-1613

-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거 화물입출항료는 외항 화물과 내항화물을 구분하여 입항 및 출항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며,
 - 별표1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요율 및 산정기준 (1)화물입출항료에는 “사용료를 이미 납부한 화물을 동일 항만내에서 선박(부선을 포함)에 의하여 운송하는 경우 다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동 건 울산항에 외항선이 입항하여 운송한 외항화물에 대해서는 외항화물입항료가 발생하게 되며, 선박의 규모가 이용부두의 조건에 적합하지 않아 내항선을 이용하여 양하작업을 하게 된 경우,
 - 이미 외항 화물입출항료를 납부한 바, 동일 울산항에서 사용료를 납부한 화물을 운송함에 따른 내항화물 입출항료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⑤

컨테이너조작장(CFS)의 사용료 적용 방안

[질의]

☒ '07. 3. 5, 안○○

- 컨테이너조작장(CFS)의 사용료는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를 적용하는지 여부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를 적용할 시 이윤(10%) 및 부가세 포함 여부

[회신]

☒ '07. 3. 19, 물류제도팀-176

-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CFS의 사용료는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와 구분하여 비



- 고란에 “사용자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산정과 관련하여 우선 적용되는 「항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국유재산법」을 적용
- 동 건 CFS/CIS는 군산항 컨테이너부두(TOC)에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축조한 후 국가귀속한 항만시설로서,
- CFS의 사용료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귀 사와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될 것이다.
 - 임대차계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국가귀속된 항만시설은 총사업비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 총사업비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음
- 부가세와 이윤을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면 무상사용을 통한 투자비 보전도 부가세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내에서 가능할 것임

⑥ 사유부두에서 정박료가 징수되는 이유

[질의]

☞ '07. 8. 22, 조○○

- 정박료의 성격, 즉 정박료는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 국유부두의 경우, 징수하지 않는 정박료가 사유부두의 경우 징수되는 이유
- 사용료 규정 제8조1항 별표1.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 요율 및 산정기준 중 1-가-(3) 정박료(수역시설 중 정박지·선류장)에서 규정한 정박료가 사유부두의 경우 징수하는 정박료와 동일한 개념인지, 다르다면 개념의 차이가 무엇인지 여부

- 2-가. 선박료-(차) 항만구역내 설치된 국가비귀속 계류시설... 면제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지

[회신]

07. 9. 17, 물류제도팀-1135

- 정박료는 항계내 수역시설 즉, 수면에 선박이 정박한 경우 징수하는 항만시설 사용료임
- 국유부두 이용 선박에 대해서는 관리청에서 접안료를 징수하는 반면,
 - 사유부두는 사인이 투자하여 건설한 시설이므로 계류시설의 이용대가는 제외하고 순수한 수역시설 사용분에 대해서만 정박료를 징수하는 것임
- 즉, 「항만법」 제32조에 따라 항계선내 모든 항만시설과 항계밖의 항만시설로 지정·고시한 시설에 대한 사용 대가로 사용료를 징수하며,
 - 특히, 접안료는 안벽, 물량장, 계선부표 등 계류시설에 접안 또는 계류하는 선박에 징수하고, 접안료 징수대상 이외의 장소에서 묘박 또는 정박한 선박에 대해서는 정박료를 징수하는 것임
- 정박지는 내외국 선박의 해상작업, 접안시설 부족 및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대기하거나, 기상악화시 피난하여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 해상구역으로서,
 - 수심과 면적을 산정하여 선박의 종류, 톤수 및 흘수 등 이용선박의 유형에 따라 지정하는 곳임
- 국가비귀속 사유 항만시설은 항계내 해상구역에 특정 수역을 한정하여 자신의 화물을 취급하는 선박만 접안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것이므로 지방청장이 지정·고시한 정박지가 공공적 성격을 갖는 것과 구별되나,
 - 선박이 정박하는 장소인 정박지라는 기능적인 면에서는 동일한 바, 수역시설을 이용한 대가로 징수하는 사용료인 점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사유부두 시설의 부족으로 접안이 곤란하여 정박지에서 대기하는 경우, 정박료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임

⑦

선박과 운송차량간 송유관 이용 액체화물의 사용료 적용방법

[질의]

☒ '07. 8. 27, 인천항만공사

- “송유관이용액체화물”이라 함은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항만 안에서 배관 시설을 통하여 선박과 저장 장소간에 수송되는 액체 또는 액체화물로 정의되어 있음
- 선박과 선박, 선박과 운송차량간 배관시설(송유관시설)을 이용하였을 경우 송유관이용액체화물 적용대상인지

[회신]

☒ '07. 12. 26, 물류제도팀-1501

- 송유관이용 액체화물은 배관시설에 의한 일관수송 하역으로서 항만시설의 이용 정도가 낮고, 항만내 교통량 감소는 물론 항만건설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등 항만관리운영의 효율성과 투입원가 등을 감안하여, 일반하역 화물과는 달리 저렴한 요율을 책정하고 있음
- 동 건 선박과 선박간 액체화물의 수송도 이동식 호스를 이용하여 해상에서 신속하게 하역작업이 이루어지고, 부두 및 항만내 도로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 하역방식의 유사성,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송유관 요



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선박과 운송차량간 하역은 접안시설을 장시간 사용하고, 항만내 도로 사용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를 초래하는 등 통상적인 송유관이용 액체화물의 하역방식과는 상이한 바, 송유관 요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⑧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용료 등 의제

[질의]

☒ '07. 11. 26, ○○제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해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경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는 규정에 따라 「항만법」 제32조에 의해 부과되는 사용료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 '08. 1. 18, 물류제도팀-46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대상은 「항만법」 제9조 제2항의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 동법 제32조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을 하고, 관리청의 허가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도 납부해야 할 것임

* 참고조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3항
- 「항만법」 제9조, 제10조, 제32조

⑨ 국가 비귀속시설의 항만시설사용료 부과 시점

[질의]

☞ '09. 5. 13, 부산지방청

- 「항만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부여되는 국가 비귀속시설(의장안벽)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부과 가능 여부와 부과 시점 등

[회신]

☞ '09. 5. 18, 항만물류과-3051

-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준공되는 항만시설은 소유권 취득(등기)와 관계없이 준공과 동시에 국가 귀속 또는 비귀속(비관리청 소유) 되고 관리청이 교부한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여야 함
 - 이에, 준공 이후 국가 비귀속하는 의장안벽의 경우, 소유권이 비관리청에게 있다고 보아 사용료 부과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또한, 귀청 질의와 같이 비귀속 시설의 범위 결정에 따라 사용료 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유권 보전 등기 완료 후 확정된 국가귀속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한 사용료 부과가 가능함.



- 준공일부터 소유권 보전 등기 완료시까지 준공된 시설물 전체에 대한 사용료 부과를 유보하되, 추후 소유권 취득(등기)이 완료되면 국가 귀속분에 대해서만 준공일을 기준으로 적용

⑩

한 선박이 타 선박의 화물칸에 적재, 입항하는 경우 사용료 부과 여부

[질의]

☒ '13. 6. 26, 신○○

- 기타 부선으로 등록되어 있는 두 척의 선박이 한 세트로 작업을 하며, 작업 종료 후 입항 시 다른 선박이 화물칸에 적재 입항하는 경우 다른 선박에 실려 있는 부선이나 또 다른 화물에도 별도로 접안료 또는 정박료 부과 여부

[회신]

☒ '13. 7. 8, 항만운영과

-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항만시설사용료 중 접안료는 개별 선박이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계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부과하며, 정박료는 개별 선박이 수역시설 중 정박지 및 선류장 등을 이용하는 경우 부과
- 따라서, 규모가 큰 부선이 규모가 작은 부선 등을 화물칸에 적재하여 입항한 후 항내 접안 또는 정박하는 경우 규모가 큰 부선은 접안료 또는 정박료 부과 대상이며, 화물칸에 적재된 부선 등에 대하여는 매 입출항 시마다 화물료를 추가로 부과함이 타당



①

대형부선에 소형부선을 접안료 및 정박료 등 부과

[질의]

 '13. 7. 2, 신○○

- 부선으로 등록된 플로팅 드라이도크(2척)로 항계 밖 일정장소에서 선박수리 시행 후 규모가 작은 부선 등을 규모가 큰 부선에 적재하여 입항하는 경우 규모가 작은 부선이나 다른 화물에도 별도의 접안료나 정박료 또는 다른 사용료가 부과되는지?

[회신]

 '13. 7. 8, 항만운영과-1151

-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항만시설사용료 중 접안료는 개별 선박이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계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부과하며, 정박료는 개별 선박이 수역시설 중 정박지 및 선류장 등을 이용하는 경우 부과함
- 따라서, 규모가 큰 부선이 규모가 작은 부선 등을 화물칸에 적재하여 입항한 후 항내에 접안 또는 정박하는 경우 규모가 큰 부선은 접안료 또는 정박료 부과 대상이며, 화물칸에 적재된 부선 등에 대하여는 매 입출항 시마다 화물료를 추가료 부과함이 타당함



12

국가귀속 항만부지 운영건물에 대한 사용료 산정기준과 공시지가의 적용기준 차이 등

[질의]

☒ '14. 2. 28, 김○○

- 국가귀속 항만부지에 운영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항만부지의 사용료 산정 기준과 운영건물의 귀속 여부에 따라 공시지가의 적용기준이 다른지?
- 국가귀속 야적장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부지가 항만부지로 용도변경된 경우 건물이 신축된 해당부지의 사용료 산정기준은?

[회신]

☒ '14. 3. 10, 항만운영과

- 「항만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국가에 귀속된 해당 항만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는 해당 항만시설 준공당시의 항만시설사용료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귀속 항만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운영건물이 국가귀속된 경우라면 해당 항만시설 준공 당시의 항만시설사용료를 기준으로 적용함이 타당
 - 그러나, 운영건물이 국가에 비귀속된 경우라면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273, '13.12.31)」 별표 1의 1.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라.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2) 건물·부지 등의 사용료에 해당되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 첫 번째 질의 회신내용과 같이 국가비귀속 건물·부지 등의 사용료 요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하며,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가액은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함



⑬

국가비귀속 부두에서 접안료 징수 가능 여부

[질의]

✎ '14. 3. 13, 김○○

- 국가비귀속 시설부두에서 접안료 징수가 가능한지?

[회신]

✎ '14. 3. 21, 항만운영과

- 「항만법」 제31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자는 그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하여 그 항만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비귀속 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 징수 근거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⑭

화물 입출항료 신고 주체 등

[질의]

✎ '14. 6. 9, 전○○

- 화물 입출항료의 신고 주체는 누구인지?
- 평택·당진항의 경우, 컨테이너 전용선에 한하여 30% 할인을 하고 있으며, 컨

테이너 화물인 경우에는 무조건 할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용선에 선적하여야만 할인이 되는지?

- 선사에서 대행 신고를 하는 경우, 화물 입출항료를 선납하고 나중에 화주에게 화물입출항료를 징수하는데, 만약 화주가 화물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이미 납부한 화물 입출항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회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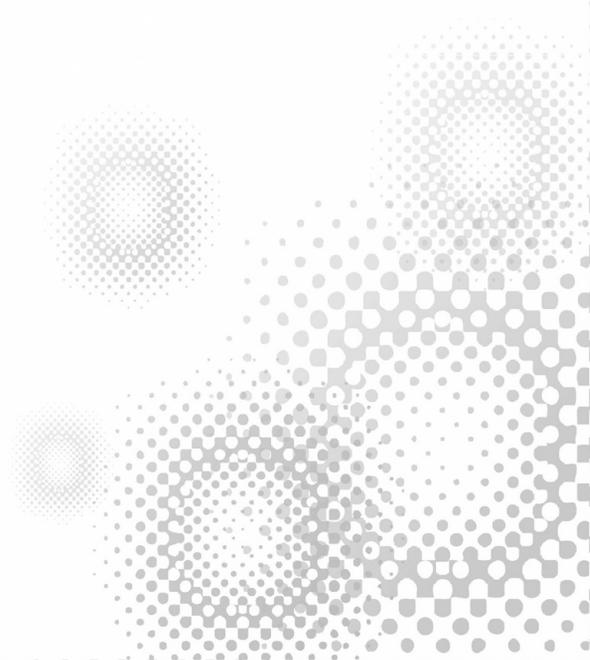
✳ '14. 6. 17, 항만운영과

- 화물 입출항료의 신고 주체는 화물의 형태에 따라서 선사, 화주, 하역회사가 될 수 있음
-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9조에 따라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률 및 면제범위에 대하여 [별표2]에 명확하게 적용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 귀하가 문의하신 평택·당진항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 국제카훼리 여객선 및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에 대해서 화물 입출항료의 30% 감면이 가능함
- 화물 입출항료는 수역시설, 임항교통시설, 화물장치장 등 항만시설 사용에 따른 비용으로서,
 - 이미 사용한 항만시설에 대하여 부과된 화물 입출항료는 사용기간의 단축, 허가의 취소 등 ‘규정’ 제20조의 과오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환급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질의 사례는 신고자와 화주간의 사인간 계약에 해당되므로 당사자간 해결 필요)



제3장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①

항만시설관리권 양수자의 다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가능여부

[질의]

* '05. 12. 13, 항만정책과-4143

- 항만시설을 설치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비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양수한 자가 당해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06. 2. 7, 항만정책과-520

- 항만시설을 설치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비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양수한 자가 당해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②

수리 목적으로 입항한 선박의 사용료 면제 여부

[질의]

* '06. 12. 12, 서○○

- 선박수리를 위하여 '06.7.30 남외항으로 입항하여 신항부두 및 남외항에서 선박을 수리한 후 '06.9.4 울산항으로 출항한 선박에서 발생한 항비의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06. 12. 29, 항만물류과-1724

- 「항만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는 선박수리를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제21조제2항은 면제의 범위·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의 별표2에서는 사용료별 감면율과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선박수리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3가지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음
 - ①조선소에서 수리를 위하여 공선으로 입항하여 공선으로 출항하는 외항선의 선박입출항료 100%
 - ②선박수리를 위하여 대기하는 선박의 정박료 100%
 - ③화물의 양적하 및 여객의 승하선 없이 선박결함의 수리 등을 목적으로 입항하여 지방청장이 지정한 정박지에 정박한 후 48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외항 통과선박일 경우 선박입출항료 및 정박료 100%
- 귀하의 “MORNING SONATA”의 경우 조선소에서 수리하기 위하여 입출항한 선박이 아니며,
 - 선박수리를 위하여 정박지에서 대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박료를 면제할 수 있으나, 실제 수리업체에서 수리 및 신항만 부두에 접안하여 수리를 하였으므로 정박료 면제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음
- 또한, 남외항 정박 후 신항만부두로 이안하여 부산항 부두시설을 이용한 뒤, 다시 남외항에 정박 후 울산항으로 출항하였으므로 통과선박에도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사용료 납부고지서 발급은 PORT-MIS(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 신고된 업체로 자동 발급되며,
 - 발급전 업체 및 선주의 요청에 따라 선주측으로도 발급이 가능함



③ 48시간을 초과한 통과선박의 사용료 면제여부

[질의]

☞ '07. 2. 5, 대산지방청

- 화물의 양적하 및 여객의 승하선 없이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유류 및 선용품 공급을 목적으로 입항하였다가 선용품 공급지연으로 48시간을 초과하여 정박한 경우, 정박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07. 2. 14, 물류제도팀-32

- 통과선박의 사용료 감면은 외항선의 국내항만 이용으로 항만운송 관련사업 활성화 및 대외인지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감면으로
 - 「무역항의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별표1]의 산정기준에 따라 [별표2]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
- 즉, 통과선박이란 ‘화물의 양·적하 및 여객의 승하선 없이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유류 등 선용품의 구입, 선원의 교대, 선박결함의 수리 또는 단순경유(제3국간 운항 중 국내항을 중간 기항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선박에 한함)를 목적으로 입항하여 지방청장이 지정한 정박지에 정박한 후 48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외항선’을 말하며
 - 상기 기본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통과선박으로 인정하여 정박료를 100% 감면하고 있으며
 - 선박결함의 수리로 부득이 4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증거서류를 확인하여 예외적으로 감면하고 있음
- 동건 선박은 유류 및 선용품공급을 위하여 입항하였다 하나 입항목적의 달성 과정에서 자체사정으로 48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정박료 감면대상인 ‘통과선박’으로 볼 수 없을 것인 바 사용료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④ TOC부두 사용에 따른 정박료 면제여부

[질의]

☒ '07. 11. 30, ○○항업(주)

- 선박이 A하역사의 TOC부두에 접안 예정이었으나, 동 시설 부족으로 정박지에서 대기한 경우 정박료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 이는 TOC제도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접안대기한 경우이므로 정박료 부과행위는 철회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TOC 제도의 운영으로 인해, 항만 전체적으로 빈 선석이 있음에도 선박을 접안할 수 없는 비효율화 현상이 발생하는 데 대한 의견은?

[회신]

☒ '07. 12. 3, 물류제도팀-1419

- 정박료는 수역시설 중 정박지·선류장을 사용한 대가로 선박에 대해 부과하며, 접안시설 부족으로 대기하는 선박에 한해 100% 감면하고 있는 바,
 - 접안시설 부족으로 대기하는 선박이란, 항만내 접안할 수 있는 부두가 존재하지 않아 운항사업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박지에서 대기하는 경우를 말하며,
 - 귀사의 경우처럼, 특정 선석 접안을 위해 자발적으로 정박하는 경우는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 즉, 귀사의 경우는 귀사(화주)가 A하역사를 지정하는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A하역사에서 운용하는 부두의 접안시설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 이는 화주·하역회사·선사간의 화물 운송·하역계약에 따라 특정부두만을 이용하고자 하는 데서 기인한 사안으로 정박료 면제가 불가함
- TOC부두 운영 관련, TOC의 목적은 항만운영에 민간 경영기법 도입으로 부두의 기계화 촉진 및 항만생산성을 제고하고, 항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귀하의 주장과는 달리, 먼저 작업하는 선박으로 인해 특정 TOC 부두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작업이 없는 타 TOC 부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부두 운영회사간 임대계약을 체결·운영하고 있으므로 TOC 운영상 문제는 없다 할 것임

⑤ 국가 비귀속 계류시설 부족으로 대기 시 사용료 면제

[질의]

☞ '08. 4. 7, 평택지방청

- 국가 비귀속계류시설 부족으로 대기하는 경우 정박료 면제여부 및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건의

[회신]

☞ '08. 5. 22, 항만유통과-672

- 국가 비귀속계류시설은 타인의 사용이 배제된 특정인을 위한 사유시설로서 공공성이 약하고 부두운영 역시 시설주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설주가 충분한 계류시설을 확보하지 못하여 선석대기 한다면 그 귀책사유가 시설주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 따라서, 국가에서 선석배정 및 사용을 허가하는 국유부두 이용 선박과 동일하게 정박료를 감면할 수 없음



⑥

‘선박결함수리’에 대한 해석여부 등

[질의]

☒ '12. 2. 23, 부산항만공사

- ‘선박결함수리’를 ‘선박수리’와 같은 의미로 봐야하는지 여부. 의미가 다르다면 ‘선박결함수리’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 ‘48시간을 초과할 때’란 48시간을 초과한 모든 시간대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 '12. 3. 7, 항만운영과-728

- 통과선박 사용료 산정 기준 중 ‘선박결함수리’란 다른 항을 목적지로 하여 항해중인 선박이 선박 자체의 결함으로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정박지에서 수리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규정 용어 중 ‘선박수리’와는 다른 의미임
- 통과선박을 정박지에 정박한 후 48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에 적용토록 규정한 취지는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나서류를 별도로 제출받아 선박결함 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통과선박이 장기간 정박하여 항만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BPA 자체규정을 개정하여 통과선박의 사용료 면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⑦

항만시설사용료 면제대상 건물 일부를 제3자에게 유상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 대상 여부

[질의]

☒ '12. 4. 3, 경상남도

- 국가소유의 항만부지에 비관리청인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이 비관리청항만공사로 건립(국가 비귀속)한 삼천포 활어회센터에 대하여 항만관리청이 항만시설사용료를 면제하여 사용허가 하였으나, 건물 일부를 제3자에게 유상 임대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항만시설사용료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 '12. 4. 16, 항만운영과-1265

- 「항만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어민들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
 - 다만, 수산업협동조합이 사용료를 면제받아 사용하고 있는 항만시설을 특정인에게 영리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할 것임

⑧

수리 또는 청소 등의 사유로 항계 밖으로 출항 시 당해 선박의 항차 분리 여부 등

[질의]

☒ '12. 6. 5, 울산항만공사

- 선박수리 또는 화물창 청소 등의 사유로 항계 밖으로 출항하는 경우 당해 선

박의 항차를 분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또는 당해 선박이 입항목적을 완료하고 최종 출항할 때까지 항차를 분리하지 않고 사용료 감면 대상이 될 경우 1회에 한하여 감면 적용 여부

[회신]

☞ '12. 6. 12, 항만운영과-1969

- 규정 별표2 1. 선박료 중 가. 선박입출항료(1)의 내용은 사용료 면제대상 선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화물양적하 목적으로 입항한 선박이 선박수리 또는 화물창 청소 등의 사유로 항계 밖으로 출항하였다가 다시 입항하는 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 선박입출항료는 1회만 면제 가능. 따라서 선박 입출항 시마다 별도의 사용료 부과 또는 면제적용이 가능하도록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4조 관련규정에 따른 입출항 관리(항차 분리) 필요
- 규정 별표2 1. 선박료 중 가. 선박입출항료(1)에서 화물양적하 목적으로 입항한 선박이 선박수리 또는 화물창 청소 사유로 입출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용료를 면제토록 규정한 것은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제도 악용사례를 예방하고 항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질의 ① 회신 내용과 같이 매 입출항 시마다 항차를 분리하여야 하며, 2회차 재 입출항시부터는 항로, 항행보조시설 등 이용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함

⑨

대기선박 등의 접안료 및 정박 면제 범위

[질의]

☞ '13. 6. 20, 김○○

- 무역선의 경우 도선 제한으로 대기 중인 선박, 기상악화로 인한 통제선박에 대



한 집안료 및 정박료를 언제까지 면제하여 주는지?

[회신]

✱ '13. 6. 21, 항만운영과

- 정박료 면제시간은 통상 기상특보해제시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항만특성상 해당선박 운항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박한 선박 중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선박”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⑩

내항선의 범주 및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을 적용 여부

[질의]

✱ '13. 12. 18, 울산항만공사

- 연안화물선이 운송하는 화물에 대하여 감면(70%)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연안화물선을 내항선으로 간주하여 모든 내항선(기타 선박요금을 납부하는 선박 제외)에도 감면을 70%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항만내에 위치한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이 건조자재 선적을 위해 조선소 의장안벽 이외의 부두를 이용한 경우 항만시설사용료 부과 및 감면을 적용 여부

[회신]

✱ '14. 1. 2, 항만운영과-5

- 항만시설사용료 관련법령에 ‘연안화물선’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해운법」 제23조에서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정의를 국내항과 국내항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을 실질적으로 ‘연안화물선’으로 볼 수 있으며,

-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에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범위를 화물선, 유조선, 부선, 예선, 폐기물운반선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 선박들이 운송하는 화물은 ‘연안화물선이 운송하는 선박’으로 간주하여 감면을 70%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

- 항만시설 사용료는 접안 또는 정박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 사용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서 명백히 면제 대상(감면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

①

건조 직후 선박을 일반부두에 접안 후 공선으로 출항하는 경우 선박입출항료 감면 여부

[질의]

☒ '14. 4. 30, 권○○

- 조선소에서 건조 완료 된 선박을 일반부두에 접안하여 선박대기장소로 사용하다 선주측에 인도하여 공선으로 출항하는 경우 선박입출항료 감면대상이 아닌지?

[회신]

☒ '14. 5. 2, 항만운영과

- 「항만법」 제30조 및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 신조선의 선박입출항료는 사용료 규정 별표 2, 1. 선박료 가. 선박입출항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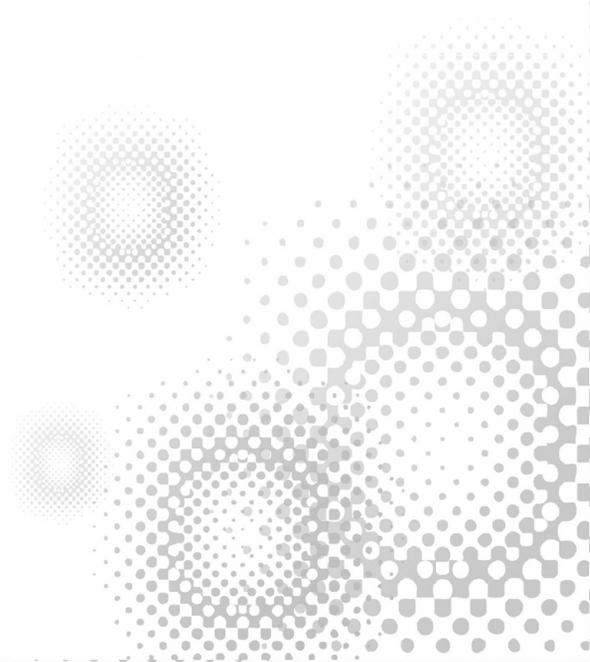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항만내 위치한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접안 또는 정박 없이 공선으로 출항하는 선박(신조선이 급유만을 목적으로 접안 또는 정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100%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 사례의 경우에는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다만, 항만공사(PA)가 관리하는 항만의 경우에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공사가 제정한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료 징수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제4장

● 비관리청항만공사 관련 등



①

비관리청 항만공사(유지보수공사) 투자비 보전 가능 여부

[질의]

☒ '02. 9. 13, 마산지방청

- 비관리청에서 20년간 무상으로 전용사용 중이던 항만시설(안벽)이 자연재해로 인해 부득이 동 시설에 대해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를 얻어 보강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 투자비 보전 가능 여부

[회신]

☒ '02. 9. 23, 항만정책과 91570-604

-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로 국가귀속한 항만시설에 대한 권리가 소유자인 국가에 있으므로 동 시설의 유지·보수 의무 또한 국가에 있음
- 그러나, 동 시설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보강공사가 필요한 상태에서 부득이 비관리청이 유지·보수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투자비를 보전해 주어야 함
 - 기존의 시설인 안벽에 대해서는 개정 전('91.10.14) 「항만법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함
 - 안벽의 보강에 투입된 투자비는 개정 후 「항만법 시행령」에 의거 총사업비가 달할 때까지 보전되어야 함

②

국가귀속 항만시설 총사업비 정산

[질의]

☒ '06. 2. 22, 마산지방청

- 「항만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귀속항만시설의 무상사용기

간 산정시 당해 항만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준공당시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준공 이후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동 규정 제9조 제3항 제4호 [별표2]에서 정한 감면율이 줄어들었을 때의 사용료 산정기준

[회신]

☒ '06. 3. 24, 항만물류과-404

- 당해 항만시설 사용이 감면목적,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정해진 감면기간 동안만 감면요율을 적용하여 총사업비를 정산하고,
 - 그 이외의 경우에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징수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감면율이 변동되어 줄어든 경우에도 위 기준을 적용하여 총사업비를 정산해야 함

③ 비관리청 투자비보전에 따른 대납경비 수수료 지급

[질의]

☒ '06. 3. 27, 인천항만공사

-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34조의2제3항 “해운대리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비보전을 받은 경우에는 「항만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납경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규정과 관련, “선사”가 투자비보전을 받은 경우에도 대납경비 수수료 지급이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 '06. 5. 19, 항만물류과-660

- “해운대리점”의 투자비보전에 대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



무처리요령」 제34조의2 제3항의 규정은 “선사”에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 선사가 국가귀속시설에 대한 비관리청항만공사를 시행하고 투자비를 보전받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17조 및 제27조제3항등에 의거하여 관리청으로부터 대납경비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④ 항만구역내 야적장 전대사용의 범위

[질의]

☒ '06. 5. 8, 김○○

- 항만부지(야적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A업체가 동 부지에 목재(원목) 보세창고를 운용하고 있으면서, B업체에게 화물에 대한 보관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항만시설의 전대행위로 보아 항만시설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06. 5. 15, 항만물류과

- 지방청장은 「항만법」 제27조 및 제7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1 및 제43,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항만시설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부산항만공사 및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항만공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관련절차에 따라 판단·처리하여야 함
- 참고로, 본건과 관련하여 우리부에서 2002년 발간하여 배포한 『항만시설사용관련 질의회신집』을 참고하기 바라며, 화물보관료의 징수형태 등에 대한 구체적

인 사실확인을 거쳐 항만시설사용권의 양도금지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야적장을 다른 여러 화주들에게 화물장치·보관장소로 사용하도록 하고 각 화주들로부터 별도의 보관료 등을 징수하며 자기 영업행위를 한다면, 이는 고시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임

⑤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의 이전

[질의]

☒ '06. 6. 9, 김○○

-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을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신고된 각 회사의 지분비율대로 무상사용권이 부여되는 것인지 여부
- 동일 컨소시엄에 속하는 A회사의 무상사용권을 B회사가 이전받아도 무방한지
- 항만시설 사용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게 되면, 「항만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항만시설 무상사용신고의 명의인을 양수인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회신]

☒ '06. 7. 4, 항만물류과-860

- 비관리청항만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한 경우 각 회사는 총사업비 범위안에서 지분비율만큼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을 부여받게 됨
- 「항만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당해 항만공사의 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30 이상 진행된 경우에는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 항만공사허가 등으로 인하여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을 이전할 수 있음

- 「항만법」 제69조에 따라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을 양수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별지 제17호 서식 ‘권리·의무 이전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함

⑥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관련 수역점용료 부과시점

[질의]

☞ '06. 7. 11, 평택지방청

-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수역점용료를 징수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실시계획 승인일과 항만시설 사용허가일간 시점 차이와 관련하여 실시계획 승인일로 소급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함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

☞ '06. 12. 12, 항만물류과-1631

- 비관리청항만공사의 경우 공사허가시 이미 “항만시설사용료 납부의무” 등을 허가조건으로 붙여 허가하고, 실시계획승인 신청서에는 항만시설사용에 관한 사항(사용시설, 목적 및 사용기간)을 기재하도록 하여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사용료가 부과됨을 확인하고 있는 바,
 - 공사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요청시 신고한 항만시설은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제3자의 사용을 배제하게

되므로

- 현실적으로 공사에 착공하여 해당시설을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실시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함이 타당함
-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승인은 지방청 항만공사과에서 처리하고, 동 공사관련 항만시설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는 항무과(항만물류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 항만공사과는 공사 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 요청시 항만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인 항무과(항만물류과)와 협의하여 처리
 - 따라서, 실시계획 승인 시 항만시설사용에 관한 허가신청을 독려하고 허가여부 및 사용료 부과 등도 함께 검토하여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실시계획 승인 후 항만시설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도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사용료(변상금) 부과는 실시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임

⑦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항만부지에 선박 잔해물을 일시적으로 적재한 경우 위법 여부

[질의]

☒ '12. 6. 1, 포항해경

- 항만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항만부지에 선박 잔해물을 일시적으로 쌓아둔 행위가 위법한 사항인지 여부

[회신]

☒ '12. 6. 5, 항만운영과-1894

- 「항만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려



는 지는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조 별지1호 서식의 ‘항만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항만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함

- 만약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는 법 제97조(벌칙) 제2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항만부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항만시설전용사용료 징수대상 시설로서 항만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경우 변상금 부과대상임

⑧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 및 승인 시 부과할 사용료(수수료)의 종류

[질의]

☒ '12. 6. 28, 경상남도

- STX조선해양(주)이 진해항내에 ‘진해항 철재부두조성’을 위해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08.4.28) 및 실시계획승인('10.6.22)을 득한 사항과 관련하여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역점용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매립면허수수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회신]

☒ '12. 7. 12, 항만운영과-2342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매립법’이라 한다)」 제3조(적용배제) 제1항제4호에 의하면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항만구역 내 수역시설에서 매립이 수반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동건 항만시설설치를 위한 비관리청항만공사의 경우 「항만법」에 따라 항만시설사용료(수역점용료)를 부과함이 타당함

- 또한, 마산항만청에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시 국가비귀속 및 수역점용료 납부조건으로 허가 하였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유수면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시(대법원 1996.5.28 선고 95다 52383 판결)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항만법」에 따라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되는 동 건 공사는 준공 전까지 공유수면(수역시설)을 점용하는 것으로 보아 수역점용료 부과대상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본 건은 공유수면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는 시점까지는 「항만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8조(별표1)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수역시설) 점용에 따른 수역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 한편, 수역점용료와는 별개로 공유수면매립수반과 관련한 매립면허수수료에 대해서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서(연안계획과)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⑨

국가 비귀속 시설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 가능 여부

[질의]

☞ '13. 10. 정○○

- 항만부지에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하여 국가에 비귀속된 폐기물저장소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항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신]

✱ '13. 10. 25, 항만운영과

-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은 「항만법」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도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질의사례와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를 통하여 건립된 비귀속 항만시설의 경우에는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시 정해진 조건과 계획대로 사용되어야 함
 - 항만공사가 관리중인 항만부지에 대하여는 항만시설사용신청(승인) 시 정해진 사용목적 및 승인조건대로 사용되어야 함을 알려드림

⑩

자가설치한 시설물의 타인에게 임대 가능 여부 등

[질의]

✱ '13. 10. 23, 정○○

- 당사의 비용으로 설치한 폐기물저장소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항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 자가시설인 폐기물저장소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항만시설(부지)의 재임대로 보는지의 여부
- 임대를 해주었을 시 관리관청에 신고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회신]

✱ '13. 10. 25, 항만운영과

- 「항만법」 제30조제1항에 의하면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의 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도 있음

- 아울러,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은 「항만법」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도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또한, 항만공사에 출자된 항만시설의 경우에는 「항만공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음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안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를 통하여 건립된 비귀속 항만시설의 경우에는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시 정해진 조건과 계획대로 사용되어야 함은 물론
- 항만공사가 관리중인 항만부지에 대하여는 항만시설사용신청(승인) 시 정해진 사용목적 및 승인 조건대로 사용되어야 함

①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된 여객선터미널의 여객터미널 이용료가 총사업비 보전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 '13. 11. 6, 경상남도

- 선사가 여객선 운영을 위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건립한 여객선터미널(국가귀속 대상)의 사용·운영에 있어 여객터미널이용료가 총사업비 보전(상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 '13. 11. 8, 항만운영과-2812

- 「항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의하면 비관리청이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미리 항만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항만법」 제 31조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자는 그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방법, 사용료의 요율,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항만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또한, 「항만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법 제31조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는 무상사용기간 산정 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질의사안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를 통한 국가귀속시설의 여객터미널이용료는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의 한 종류이므로 총사업비와 상계처리함이 타당함

12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경사물양장에 접안하는 부두에 대해서도 시설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

☞ '14. 1. 21, 정○○

- 경사물양장에 대하여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부두에 접안하는 선박은 따로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회신]

☞ '14. 1. 28, 항만운영과

- 「항만법」 제 30조제1항에 의하면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의 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도 있음

- 경사식 물양장과 같은 계류시설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의 선박들이 화물 하역 등을 위하여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공익에 반하여 단순 접안 목적으로 특정인에게만 사용 허가할 수 없으며, 특정 접안시설을 동일 시간대에 2인 이상에게 중복하여 사용허가할 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3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후 잔존 투자비에 대한 보상방법 등

[질의]

14. 3. 3, 한국관광공사

- 한국관광공사가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공사에 투자한 투자비를 배분하여 군산항에 대해 사용료를 투자비에 이를 때까지 면제받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권을 부여받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 공사가 군산항에 대해 사용권을 부여받으면서 배분된 투자금이 잔존하는 상황에서는 공사의 군산항 면세점 부지의 사용권이 계속 존속하는지 여부
- 공사의 군산항에 대한 사용권이 군산항에 배분된 투자비가 잔존함에도 불구하고 군산항에 대한 사용권을 박탈하는 경우 공사의 투자비 잔존액에 대하여 국가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신]

14. 3. 7, 항만운영과-833

- 비관리청은 「항만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건설에 사용된 총



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항만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항만시설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여 항만시설 사용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공사가 국가 귀속 항만시설 외에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은 총사업비에 이를 때까지이며, 군산항에서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다 하여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한 사용권이 계속 존속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항만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은 매 사용허가 시 허가서에 명시된 사용기간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공사가 동 건 비관리청항만공사와 관련하여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사용 시 면제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는 기 통보된 보전금액까지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향후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동 시설에 대한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아 투자비 잔존액을 보전받을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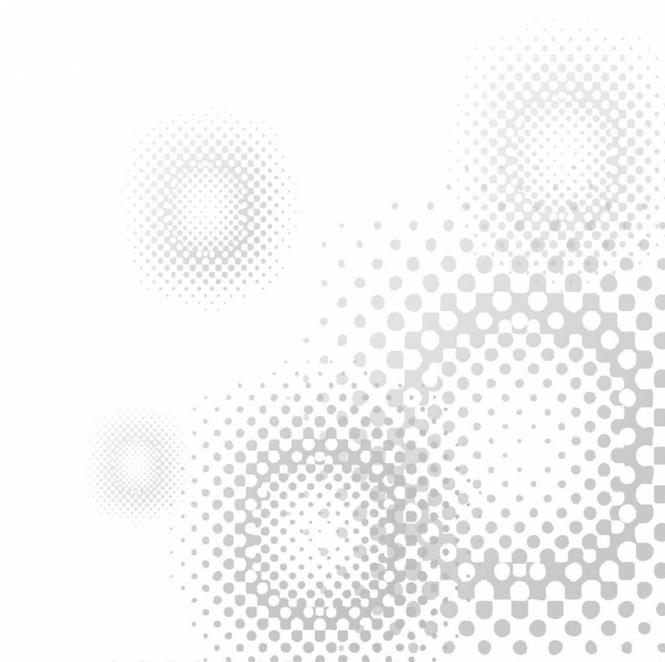
제2편

항만운송 사업



제 1 장

항만하역업



①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 중 해당시설에 근저당 설정 시 동 채권가액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 '01. 3. 24, 부산지방청

- 「항만운송사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 의한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평가액 산정에 있어 해당시설에 근저당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채권가액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 '01. 5. 11, 항만운영과-1342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비고 4.에 의하여 해당업종에 필요한 시설은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로서 급지별 최저 시설평가액의 3분의 2이상을 본인이 소유한 것으로만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유한 시설에 대하여 근저당 등 사권 설정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평가액 산정에 있어 사권 설정에 따른 채권가액을 제외하고 산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항만운송사업 등록기관에서는 항만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5]에 따라 행정처분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② 본인의 소유장비로 본인의 화물을 하역하는 경우

[질의]

☞ '07. 4. 15, 문○○

- 항만공용부두에서 하역업 등록없이 본인의 소유장비(포크레인)로 본인의 화물을 자가하역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 '07. 4. 16, 항만운영팀-658

- ‘항만운송’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장비로 귀하의 화물을 하역하는 것은 가능하나,
 - 화물 최종 소요처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기존하역업체 및 항만노조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경우, 하역업체로 등록하여 하역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③ 자가하역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예시

[질의]

☞ '07. 4. 23, ○○지방검찰청

- 화주가 항만에서 화물을 하역하는 경우 반드시 하역업체를 통해 하역계약을 체결한 후 항만노조의 지원을 받아 하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자가하역인 경우 하역업체나 항만노조의 지원을 받지 않고 화주가 자체 인력으로 하역작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어떤 경우에 자가하역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예시
 - 부두에서 크레인을 직접 생산한 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항만을 이용, 배에 선적하여 크레인을 운반하여야 하는 경우 자가하역 여부
 - 골재회사가 골재를 직접 구입한 후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항만을 이용, 배에 선적하여 골재를 운반하여야 하는 경우 자가하역 여부
- [자가하역이 아닌 경우] 하역업체 및 항만노조 근로자들의 숙련성이 부족하여 대형 크레인 등 운반작업에 노조의 작업이 부적합하여도 하역업체와 하역계약을 체결하고 반드시 항만노조의 노무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자가하역이 아닌 경우] 크레인 등 하역작업시 단순노무(와이어 줄 연결, 받침대 받침)를 제공받고도 무게나 부피 비율로 항만하역요금표에 따라 하역업체에 요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노무를 제공받지 않은 채 하역을 한 경우도 항만하역요금표에 따라 요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기존 항만하역사의 항만서비스에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직접하역업체로 등록하여 하역작업을 할 수가 있다고 하였는데 한정하역업자로 등록하면 자가하역 여부를 불문하고 항만노조의 노무를 받지 않고 화주가 자체 인력과 장비로 하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07. 5. 4, 항만운영팀-768

- 「항만운송사업법」은 “항만운송”에 대해 타인의 수요에 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수요에 응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면 「항만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만하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화주가 항만하역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직접 하역을 할 수 있음
 -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수요에 응한 행위가 아닌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으로 정의된 것은 없으며, 과거에 유권해석(1979. 해운항만청)에서는 “여객선의 여객이 자기화물을 휴대운반하는 경우와 같이 외

- 견상 자기수요에 의한 행위인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관적으로 자기수요에 의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적다”라고 설명한 바 있음
- 개별적인 하역행위가 타인의 수요에 응하는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개별 하역행위의 실제 운송방식, 계약내용 등 사안별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 또한 하역작업에 투입되는 노무인력은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지방노동청)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은 해당 지역 항운노조가 소속 노조원을 공급하고 있으며, 항운노조의 항운노조원 투입문제와 관련한 이 사업의 법적 권리·의무관계는 관할 부서인 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 현재 질의에 적시된 내용으로만 판단한다면, 화주가 직접 제작한 크레인을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항만을 이용하여 하역작업을 하였다면 이는 “타인의 수요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항만운송사업상의 항만운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골재회사가 구입한 화물을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항만을 이용하여 하역작업을 하였다면 이는 “타인의 수요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에 해당하는 하역행위라면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하역사업등록을 한 업체만이 하역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만하역업체와 계약을 하거나 직접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하여 하역을 할 수 있음
- 항운노조의 항운노조원 투입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적으로는 항운노조가 노동부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영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법적 권리·의무관계는 관할 부서의 해석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 다만, 항운노조에서 주장하는 독점적인 노무공급권한은 법률적인 권리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항만에서의 오래된 관행에 따라 항만하역업체들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항만하역요금은 인력 투입, 장비 투입 등을 포함한 하역행위 전체에 대한 요금을 정한 것이며, 하역행위의 범위에 따른 구체적인 요금을 정한 것은 아님



- 따라서 실제 지급되는 하역요금은 항만하역사업자와 하역서비스를 제공받는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일반하역업체로 등록하든 한정하역업체로 등록하든 항만운송사업법상의 항만하역업체로 등록한 것이며 항만운송사업법상 권리의무관계는 동일함. 다만 질의3에서 답한 바와 같이 항운노조원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인 노동부의 해석에 따라야 함
-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당해 항운노조가 당해 지역에서 근로자 공급사업허가를 받아 노무공급을 해오고 있으며, 근로자 공급사업허가를 받은 지역에서는 근로자파견업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하역업체가 외부로부터 인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운노조원을 사용하고 있음

④

타인의 수요에 응하는 행위인지 여부

[질의]

* '07. 12. 27, 포항지방청

- (주)○○제강이 직접 자기화물을 하역할 경우 항만운송사업법상 “타인의 수요에 응하는 행위”인지 여부
- 타인의 수요에 응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항운노조원을 배제하고 하역작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08. 1. 21, 항만운영팀-121

- 24·25번 선석에서 귀사의 필요에 의하여 귀사가 직접 철제품 생산의 원료 중

하나인 ‘슬라브’만을 하역하는 행위는 항만운송사업법상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 다만, 26번 선석에서 하역하는 후관은 귀사가 직접 생산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해송을 통해 국내 조선소 등 타사에 납품되는 철제품이므로 이는 판매를 목적으로 한 행위이며 타사의 필요에 의해 하역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항만운송사업법상 ‘타인의 수요에 응하는 행위’인 것으로 판단됨

○ 항운노조원 공급·배제문제는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해석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⑤ 불개항 부두 등에서 화물을 직접 공급한 경우 노조비 지불 여부

[질의]

☒ '08. 2, 여주시 ○○○

- 도서지방 및 해안지역의 불개항 부두 또는 임시 간이물양장에서 특수선박(해상비피선) 자체에서 생산한 콘크리트를 특수 차량(믹서트럭)으로 직접 공급할 경우 해운 노조비를 지불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개항부두에서 자체건설공사에 필요한 콘크리트를 특수선박에서 생산하여 자체 장비로 직접 공급할 경우 노조비를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
- 항만공사 및 해상공사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개항 및 불개항 부두에서 선적 또는 하역할 경우 항비 또는 노조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 '08. 2. 19, 항만유통과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무역항만 및 지정 항만에서

화물을 선적하거나 선박으로부터 양하하는 경우에는 항만하역사업체를 통해 하역작업을 하여야 할 것임

- 이 경우, 「직업안정법」 제33조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은 해당 지역 항운노조가 항만하역업체들과의 임금·단체협약을 통해 소속 노조원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가로 노조비용을 지급받고 있음
- 그러나,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이외의 도·시·군·자치단체, 불개항장, 어항 등에서는 「항만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만하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직접 하역을 할 수 있음

⑥

무역항 이외 지역에서 직접 고용한 인부로 작업 가능 여부

[질의]

✱ '08. 9. 김○○

- 울릉도 지역의 항구에서 화물주가 항운노조원을 배제하고 직접 고용한 인부로 작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08. 9. 12, 항만유통과

-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울릉도 지역에 있는 항구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님
- 따라서, 선박으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한 하역작업은 항만운송사업법령과 관계 없이 화물운송 또는 하역 당사자간 자율적인 공급계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 해당 지역 항운노조가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근로자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노무공급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은 주무관청인 지방노동청에 문의

⑦

경쟁입찰을 통한 하역요금 절감 가능에도 불구하고 항만하역요금표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 '08. 10, 김○○

- 사이로 이용요금에 대해 경쟁입찰을 붙여 사이로 운영업체를 선정할 경우, 현재보다 사이로 이용요금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경우 『항만하역요금표』상 하역화물 요금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 '08. 10. 7, 항만유통과

- 인천항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법이 적용되는 항만으로서,
- 항만하역사업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항만하역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동 하역요금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⑧ 항만하역사업 최초 등록사항 등 변동 시 조치 필요 사항

[질의]

☒ '08. 10, 강○○

- 항만하역사업에 있어 최초 등록 및 신고한 사항에 있어 시설, 장비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하역업자는 관리청에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 '08. 10. 16, 항만유통과

- 항만하역사업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6조 및 제26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항만운송업무처리지침」 제13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자로부터 그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관리청은 변경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항만하역업 등록에 관한 주요사항에 변동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해양항만관리청에 변경요청을 하여야 할 것임

⑨ 화주가 자가부두에서 하역 시 직접 하역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 '09. 2, 장○○

- 화주가 자신의 부두에서 하역할 경우 별도의 하역업체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역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09. 2. 13, 항만유통과

-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항만운송”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수요에 응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면 「항만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항만하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화주가 항만하역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직접 하역을 할 수 있음
- 그러나,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수요에 응한 행위가 아닌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으로 정의된 것은 없으며, 과거에 유권해석(1979. 해운항만청)에서 “여객선의 여객이 자기화물을 휴대 운반하는 경우와 같이 외견상 자기수요에 의한 행위인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관적으로 자기수요에 의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적다”라고 설명한 바 있음
- 이에, 개별적인 하역행위가 타인에 수요에 응하는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개별 하역행위의 실제 운송방식, 계약내용 등 사안별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⑩

연안항에서 하역회사에서 하역 하지 않는 경우 등에도 하역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 '09. 9, 문○○

- 연안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도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하역회사에서 항만내에 화물을 적하하거나 양하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하역료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지 여부

- 하역회사의 하역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하역료를 지불하여야 하는지

[회신]

☞ '09. 9. 10, 항만운영과

- 귀하께서 질의한 연안항에 대해서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항만이 아니므로 「항만운송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그러므로, 연안항과 도서지역 등에서는 「항만운송사업법」과 관계없이 화물운송 또는 하역 당사자간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 「항만운송사업법」이 적용되는 무역항에서의 “항만운송”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⑪

항만하역요금 신고대상 항만시설의 별도 고시 행위 필요성 및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범위

[질의]

☞ '10. 2. 10, 인천지방청

-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허가’ 또는 ‘실시계획승인’이나, 「신항만건설촉진법」 또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사업 관련 ‘고시행위’를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시행위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의 ‘컨테이너 전용 부두’는 「항만법」상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컨테이너부두”에 한정되는 지 여부

[회신]

☒ '10. 4. 5, 항만운영과-1442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요금 신고제도”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하역요금 인가제’에 대한 특례 적용사항으로, 신고제 적용대상 관련 ‘고시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라 비관리청 또는 민자사업으로 조성되는 항만시설에 대한 “고시행위”와 그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단순 의제할 수 없으며, 신고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별도 “고시행위”가 필요함
- 항만하역요금 신고대상 “컨테이너 전용 부두”는
가. 「항만법」상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컨테이너 부두”와
나. ‘컨테이너전용 하역장비(컨테이너 크레인 등)’을 갖추고, 실제 컨테이너 화물을 주로 취급하는 항만시설
- 다만, 항만하역요금 신고제도 적용을 위한 “항만시설의 고시”와 하역요금 신고제를 따르는 “컨테이너 전용 부두”의 적용은 해당 항만시설(부두)에서 취급하는 화물의 특성(화물주, 품목, 처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12

어선으로부터 어획물 하역작업 시 항운노조를 통하여
해야하는지 여부

[질의]

☒ '11. 5. 12, 제주해경

- 제주항에 입항한 어선에서 어획물 하역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 항운노조를 통하여 하역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 어선 선원이 하역작업을 하여도 된다면 관련근거



[회신]

☒ '11. 5. 17, 항만운영과-1408

- 「항만운송사업법」이 적용되는 항만은 같은 법 제2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항만법」상 무역항으로 한정되며, 항만운송이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가 전제되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어획물운반선에 의한 운송은 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어선(선주 또는 어획물 화물주)에서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하역사업 등록업체에 항만운송서비스를 요청하거나 또는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업체(항운노조)와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항만운송사업법」상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적인 사항으로 판단됨

⑬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고시 후 시행한 항만시설의 항만하역요금 신고대상 여부

[질의]

☒ '12. 3. 28, 서○○

-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고시 후 시행한 항만시설은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항만하역요금 신고대상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해석 요망

[회신]

☒ '12. 3. 30, 항만운영과-1031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요금 신고제도”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하역요금 인가제’에 대한 특례 적용사항으로,

- 신고제 적용대상 관련 ‘고시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라 비관리청 또는 민자사업으로 조성되는 항만시설에 대한 “고시행위”와 그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단순 의제할 수 없음
- 따라서, 신고요금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별도 “고시행위” 필요하며, 별도 고시가 없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요금인가를 받아야 함

14

자사생산 제품의 판매를 위해 자가하역하는 경우 하역업 등록 여부

[질의]

☞ '12. 4. 3, 울산지방청

- 자사에서 생산된 제품을 타사에 판매하기 위해 이를 자가하역하는 행위가 「항만운송사업법」상의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위 행위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 항만하역업을 등록하였으나, 하역작업 수행에 따른 비용(하역요금)을 받지 않을 경우 하역요금을 정하지 않고 하역요금 인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12. 4. 30, 항만운영과-1436

-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1항의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것은 없으나, 원료를 수입하여 생산된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수반되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인 경우 항만하역업 등록대상임



- 다만, 타인의 의뢰를 받아 타인의 계산으로 운송을 하는 것인지 여부, 화물운송이 누구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운송에 따른 이익을 누가 향유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영업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가 복합적으로 발생되므로 항만하역업을 등록하는 것임
-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의하면 “항만운송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만운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항만하역업체가 자가시설·장비를 이용, 직접 하역작업을 수행하면서 실제 하역요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하역업체로부터 동 내용으로 요금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하역요금을 정하지 않고 인가함이 타당할 것임

⑮

한정하역업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질의]

* '12. 8. 27, 부산청

- 취급화물의 하역형태가 한정되는 경우 한정하역업 등록 신청자가 동 한정 취급 화물 하역과 관련 있는 시설(하역장비)을 반드시 소유 또는 임대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는 한정 취급화물의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 중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항만하역장비의 종류)의 규정에 의한 장비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시설(하역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12. 8. 31, 항만운영과-2709

-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제1항에 의하면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제4조제3항

에 의하면 한정하역사업의 등록은 이용자별·취급화물별 또는 「항만법」 제2조 제5호의 항만시설별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항만운송사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이용자, 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정하역사업 등록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사업)의 등록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 동 사안의 경우 밀폐·흡입형 하역장비를 장착하여 자동하역이 가능한 시멘트 전용 운반선이 부두(육상)에 있는 분말시멘트 운반차량에 직접 하역이 가능하고 별도의 하역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별도의 시설(항만하역장비)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16

준설토를 부선에 적재하여 예인선으로 끌고 가는 경우 항만운송사업 대상인지 여부

[질의]

☒ 임○○ 외 1명

- 항만 내 준설공사를 시행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준설선이 채취한 준설토를 토운선(부선)에 적재하여 예인선으로 끌고 투기장에 배출하는 행위 등이 항만운송사업 대상인지

[회신]

☒ '13. 7. 16, 항만운영과-1257

- 항만운송의 정의 :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행위



- ① “항만운송”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정의)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무역항이나 노화도항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만시설 등에서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화물주나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하거나 화물주에게 인도하는 행위 또는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 ② ①의 행위에 선행하거나 후속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여 하는 행위
 - ③ ①의 행위에 선행하거나 후속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행위
- 항만운송사업 대상 여부 : 항만 내 또는 항만과 항만외의 장소와의 사이에서 준설토를 운반하여 투기장에 배출하거나 준설토를 신기 위하여 부선을 예인선으로 끌고 항해하는 행위는 ①의 행위에 선행하거나 후속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⑰

항만하역사업자가 자기가 수탁한 항만하역업무를 타 사업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 하도급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질의]

* '13. 7. 30, 부산지방청

- 항만하역사업자(A)가 그가 수탁한 항만하역업무를 다른 항만하역사업자(B) 또는 용역업체(B)에게 일부 또는 전부 하도급 할 수 있는지 여부, 이 경우 B가 수행한 하역행위를 B의 사업수행 실적으로 볼 수 있는지
- 항만하역사업체의 대표자(A)가 「관세법」 제269조를 위반하여 통고처분 받은

날 사임하여 대표자가 B로 변경된 경우, 전임 대표자 A의 「관세법」 위반 행위를 사유로 소급하여 동 항만하역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는지

- 항만하역사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12.6~'13.4)해 오다 행정관청의 실태(등록기준 등) 조사 시('13.5)에는 장비를 구입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할 경우 과거 등록기준을 미달한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는지

[회신]

✳ '13. 8. 9, 항만운영과-1615

- 항만하역사업의 ‘전부하도급 금지’ 관련 규정은 '99.2.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 개정 시 삭제되어 수탁한 항만운송을 일부 또는 전부 하도급 할 수 있으나,
 - B업체가 항만하역사업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항만에서 항만하역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B업체가 등록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아 수행한 항만운송행위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사업 수행 실적으로 볼 수 없음
 - 다만, B업체가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한 업체인 경우에는 그가 수행한 항만운송행위는 B의 사업 수행 실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항만운송사업체의 대표자 A가 사업체의 대표로서 「관세법」 제269조를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비록 위반행위 이후 동 사업체의 대표자가 A에서 B로 변경되었다 하여도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항만운송사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가능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6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란 현재 등록기준에 미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현재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면 과거 등록기준 미달사실에 대하여 처분하기는 곤란



⑱

「폐기물관리법」상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업 등록 여부

[질의]

☒ '13. 12. 5, 대구지검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 대상이나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용역업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 '13. 12. 13, 항만운영과-3251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에서 항만용역업의 사업내용으로 폐기물의 수집·운반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나 항만용역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동법 제26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어 귀청이 질의하신 경우는 항만용역업의 등록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⑲

차량 운임 외에 별도의 노조비 징수가 정당한지 여부

[질의]

☒ '14. 5. 8, 이○○

- 철부선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 시 선사에 차량 운임을 부담하는데 항운노조가 차량운전자를 상대로 노조비를 받는 것이 정당한지?

[회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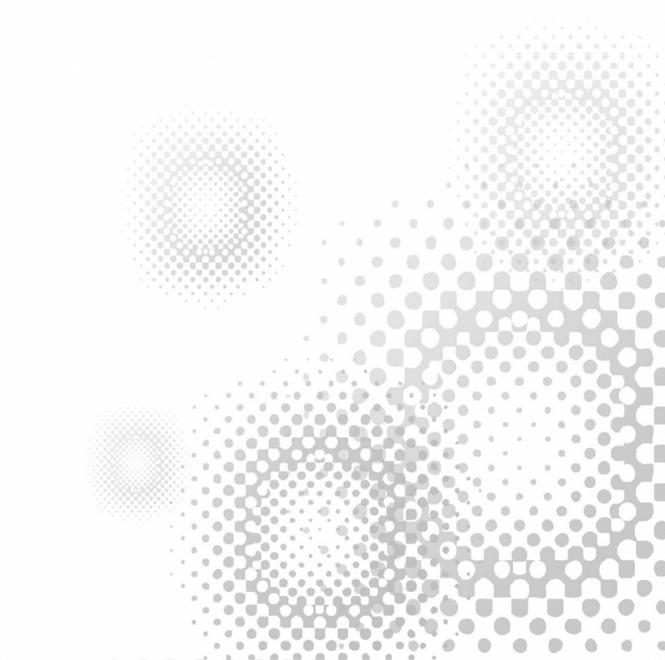
✳ '14. 5. 15, 항만운영과

-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항만(무역항 등) 중 비상용부두에서의 화물 하역작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독점적으로 노무공급허가를 받은 항운노조가 담당하고 있으며,
 - 전국항운연맹에 확인 결과 항운노조원은 철부선 입출항 시 선사의 요청에 따라 화물차량 양·적하 과정에서 차량을 주차할 장소로 인도하는 신호 업무와 차량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고박작업 및 고박해체작업 등에 참여하고 차주로부터 화물 하역노임 및 화물고정 노임 등을 ‘양육비*(민원인께서는 “노조비”라 칭한 부분)’라는 명목으로 받고 있음
 - * 양육비는 선사에서 차량 운반에 대한 대가로 받고 있는 운임·요금과는 별개의 비용임
 - 다량의 화물이 양적하 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하역사 등이 화물 양적하 과정에 참여하고 항운노조원의 노무인력 제공에 따른 대가를 하역사가 부담(하역사는 화주나 선사에게 하역요금 청구)하나,
 - 연안 도서를 주로 운항하는 철부선의 경우에는 물량이 미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통상 하역사가 하역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항운노조가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직접 차량운전자에게 받는 비용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요금인가나 신고에 포함된 요금은 아니며, 항운노조가 노무인력을 제공하고 별도로 청구하는 대가성 비용으로 판단됨



제2장

검수·검량·감정사



① 선하증권 발급이 검량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 '07. 3. 4, ○○○

- CFS수출화물을 복합운송주선업체 직원이 자체적으로 검량하여 그 결과를 선하증권에 기재하고 선하증권에 서명하여 화주에게 발급하는 행위가 「항만운송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 '07. 3. 5, 항만운영팀

-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검량은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의 계산 또는 증명을 행하는 일”로서 - 실무에서는 선적 또는 양하시점에서의 당해 화물에 대한 화주·하역사·선사 상호간 인수도 및 세관 통관과 관련한 수량의 확인(계산 및 증명)에 관한 사항을 의미함
- 따라서, 선사가 운송을 위하여 발급하는 선하증권에 당해 화물의 수량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날인하는 일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다른 입증 없는 한 이를 위 「항만운송사업법」에 직접 위반되었다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검수사 등의 자격 등록 주체 및 보조검수사 등의 업무범위

[질의]

☞ '08. 7. 9, 인천해양경찰서

- 「항만운송사업법」 제7조(검수사 등의 자격 및 등록)에 대한 등록의 주체

- 「항만운송업무처리지침」 제6조제2항에서 “보조검수사 등은 독립하여 검수업무 등을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독립’의 범위 및 위반시 ‘처벌조항’

[회신]

✧ '08. 7. 14, 항만유통과-1180

- 등록의 주체는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검수사 등이 되고자 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함
- 항만운송사업법령에서 ‘독립’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제정취지로 볼 때 검수사 등의 지시와 감독을 직접적으로 받아 관련 업무를 보조 수행할 수 있는 시·공간적 범위내로 보아야 하며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판단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동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32조제1호 규정(제7조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검수·감정 또는 검량업무에 종사한 자)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③ 정규직 아닌 검수사 확보가 등록기준 위반인지 여부

[질의]

✧ '08. 10, 울산해양경찰서

- 검수업체에서 정규직이 아닌 검수사(4대보험 미가입 일용직)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등록기준 위반 여부



[회신]

* '08. 10. 24, 항만유통과

- 검수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에 따라 울산항에서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과 검수사 7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또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5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등록기준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등록증을 교부하는데 검수사의 신분을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검수사의 수’만을 확인하고 있음
- 따라서, 검수업체의 검수사 7인 이상 확보여부는 검수사의 신분이 아닌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검수사가 한국검수검정협회에서 교부받은 검수사등수첩 또는 등록대장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④

1인이 감정·검량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경우 자격증 보유인원 산정방법

[질의]

* '08. 12. 이○○

- 1인이 감정·검량사 자격증을 모두 보유한 경우, 감정업과 검량업 등록기준 상 최소한의 자격증 보유자(인원) 산정방법은?

[회신]

* '08. 12. 15, 항만유통과

- 감정·검량사업은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및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무역항에서 선적화물 및 선박에 관련된 증명·조사 및 감정을 행하는 사업으로서 일정 등록기준(각 사업별 자본금 5천만원 이상, 6인 이상)을 갖춰 국토

해양부에 등록하고 그 사업을 영위토록 규정하고 있음

- '97.12월 법 개정 이전에는 감정·검량정업이 1개의 면허제 사업으로 각 7인 이상의 자격자를 요구하였으나, 이후 규제완화 차원에서 감정·검량사업을 각각의 개별사업으로 구분하고 등록제로 전환하였으며 '99.5월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현재와 같은 등록기준으로 변경되어 적용하고 있음
 - 이는 감정·검량업무에 자율경쟁을 통한 항만서비스 향상을 위해 각각의 개별 사업으로 구분하더라도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한 자가 당해 업종에 종사하도록 하여 감정·검량업무의 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 이에, 감정·검량사업의 자격자 수에 대한 등록기준은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구비요건이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업자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화물량 처리에 전념할 수 있는 필수적인 자격자 수(인원)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을 1개 업체가 모두 등록·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에 감정사 6인 이상, 검량사 6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즉, 1인이 감정·검량사 자격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 등록기준 중 1개의 사업등록을 위한 자격자(인원) 수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⑤

외국계 회사가 검량·감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

[질의]

☞ '09. 9. 11, 박○○

- 외국계 회사가 국내에서 「항만운송사업법」상 검량·감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는 해양수산부에 등록해야 하는지?

[회신]

☒ '09. 9. 16, 항만운영과-1363

- 외국계 회사가 국내에서 검량·감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만운송사업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함

⑥ 감정사 및 감정평가사 업무 범위

[질의]

☒ '09. 9. 서○○

- 감정사 및 감정평가사 관련 감정업무 범위에 대한 문의

[회신]

☒ '09. 9. 25, 항만운영과

-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및 제3조에 기재된 감정 및 감정사업에서 말하는 감정의 용어 정의
 -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1항제15호는 감정을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조사 및 감정을 행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국토해양부고시인 「항만운송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감정사업의 범위를 “창구검사, 적부검사, 화물의 손해감정, 화물의 현상검사, 화물의 품질검사, 견본 채취검사, 액량감정, 선체·기관 및 속구에 대한 현상과 손해에 대한 검사 및 감정, 선박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사실·확인조사”로 규정하고 있음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기재된 감정의 정의와 「항만운

- 송사업법」에서 정한 감정이 다른 것인지
- 「항만운송사업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각 법률들은 그 목적이 상이하며, 법률의 적용분야가 다름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항만운송사업법」상 감정은 1번 답변과 같으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감정은 같은법 제2조제7호에서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성격이 다른 용어를 서로 비교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 선박 매매, 폐기등의 사안이 있을시, 평가가액을 추산하는 것이 「항만운송사업법」에서 말하는 감정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 1번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이 「항만운송사업법」상 감정에는 선박 매매, 폐기시의 평가가액을 추산하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음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동 자격만으로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감정업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다면 감정평가사 자격외에 별도로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감정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한 후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 사업을 등록해야 하는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항만운송사업법」은 법률의 제정목적은 물론 적용범위도 상이하므로 해당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취득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함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감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법 제7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등록해야 하며, 또한 감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같은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에서 제시된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업을 등록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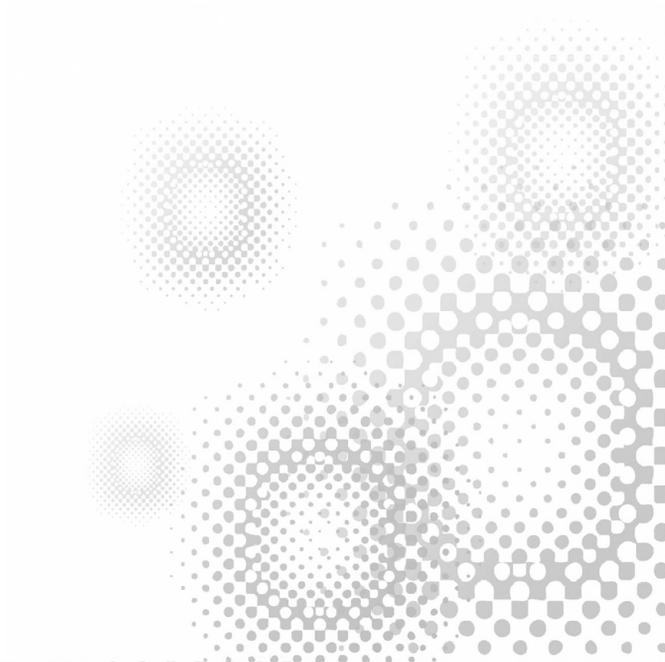
제3편

항만운송관련사업



제1장

항만용역업



①

타 항만에서 사업 등록없이 지사설립 후 용역제공 가능여부

[질의]

☞ '07. 3. 5, ○○○

-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내화물고정작업:쇼링)의 등록증 규정사항에 본사의 사업구역이 포항항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 당사와 선박회사 간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계약 선박회사가 타 지역항에 접안하여 당사에 용역작업을 의뢰하여 당사가 타 지역항에 사업구역 등록없이 지사를 설립하여 용역작업을 수행할 경우 「항만운송사업법」의 규정에 위반이 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

[회신]

☞ '07. 3. 5, 항만운영팀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사업의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별 및 업종별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하여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귀하께서 등록한 항만(포항항)외에 다른 항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항만에 등록하신 후 영업을 하여야 함
- 다만,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2,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될 시에는 ‘타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함

②

항만구역을 벗어난 해상간 작업인부 운송

[질의]

☒ '07. 7. 6, 부산해양경찰서

- 부산항 항만구역에 대한 항만용역업 등록된 선박 임차 운영업체에서 부산항 항만구역내 해상과 부산항 항만구역을 벗어난 해상간 동사에서 고용한 작업인부들을 별도의 운임료 없이 운송한 경우에
 -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2(타 항만 일시적 영업행위) 규정에 의한 사전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해운법」 제3조, 제4조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동 항만운송관련사업등록증상 등록조건 중 “명의를 타인에게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위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지입제 경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시 위와 같이 임차운영관계에 있어서 등록조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 '07. 7. 25, 항만운영팀-1188

- 동 사안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만안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므로 「항만운송사업법」이 적용되지 않음
- 해운법령상의 해상여객운송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하므로 운임을 받지 않고 인원을 수송하는 것은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③ 항만용역업 중 화물고정업만 등록 가능여부

[질의]

☒ '07. 8. 23, 이○○

- 항만용역업중 화물고정업만 영위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통선·급수선 등 항만용역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지

[회신]

☒ '07. 8. 24, 항만운영팀

- 「항만운송사업법」에는 항만용역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등록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음
 - 하지만,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별표 6에는 항만별 여건을 고려하여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산항의 경우 동 법령에 의거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울산항의 경우에도 울산청 차원에서 검토하여 해결할 사안이라고 판단됨

④ 통선의 법률적 의미 및 관련규정의 적용

[질의]

☒ '08. 3. 24, 정○○

- 통선의 법률적 의미와 관련규정에 대하여

- 기타선으로 등록된 선박이 인원을 승하선시 무허가 통선으로 단속되는지 여부
- 승선인원 13명인 기타선이 개인용도로 사용시 통선업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회신]

☒ '08. 4. 8, 항만유통과

- 통선업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규정에 의거 항만 안에서 본선과 육지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인원 및 문서 등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함
 - 참고로, 여객선사업은 13인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해운법」 제4조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영위하여야 함
 - * 여객운송사업은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통선업 등 항만운송관련사업 이외의 것임
- 선박검사증서상 기타선으로 등재되었다 하여 통선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통선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해양항만청에 사업등록을 하고 영위하여야 할 것이며, 등록하지 않고 사업하는 경우 단속대상에 해당됨

⑤

항만용역업의 종합등록제를 완화하여 개별등록 가능 여부

[질의]

☒ '08 5, 김○○

- 현행 항만용역업(통선, 줄잡이, 청소, 급수 등)의 종합적 등록제를 완화하여 광양항에서 선박청소업으로 ‘화물고정’업만을 개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08 5. 22, 항만유통과

- ‘화물고정’ 사업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항만별로 통선, 줄잡이, 청소, 급수 등을 포함하는 ‘항만용역업’으로 등록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 예외적으로 동법 시행령 별표6 비고 5항에 의거 시설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등록할 수 있으나, 이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항만의 특성 또는 업종별 수급사정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재량권한에 해당되므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 이는, 과거에 통선, 급수, 줄잡이, 청소업 등 개별 업종별로 허가 하였으나, (일괄서비스 제공을 위해) '84.10월 이들 업종을 통합한 ‘항만용역업’으로 신설된 후, '97.12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화하여 규제를 완화한 사안이며
 - 이로 인하여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이 자유로워져 서비스 경쟁체제가 강화된 반면, 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요금 덤핑 등 시장질서의 문란 및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었다는 평가가 공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⑥

공사작업선의 항만용역업(통선업) 등록대상 여부

[질의]

* '08. 7. 15, 제주해양경찰서

- 제주항내 방파제 축조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 소유 예인선 또는 임대 어선을 이용하여 작업인부를 부선등 선박으로 운송하는 행위가 항만용역업(통선업) 등록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상기에 대한 운송행위가 항만용역업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여타 법률 적용 여부

- 공사업체 예인선이 공사인부 운송목적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임시 검사받아 여객용도로 승선인원을 증원하여 운항할 경우 위법성 여부

[회신]

✎ '08. 7. 17, 항만유통과-1249

- 통선업은 항만안에서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규정에 의거 정박중인 본선과 육지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선박이 항만을 입출항하는 과정에서 부두시설에 접안하지 못하여 해상에 대기중인 본선 선원 및 문서 등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함
- 따라서, 공사작업 인부를 운송하는 행위는 항만용역업(통선업) 사업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사람을 운송하는 사업은 일반적으로 「해운법」 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서 적용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람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적법하게 선박의 용도변경을 득하였다고 판단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해양항만청 및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람

⑦ 통선업의 범위 등

[질의]

✎ '09. 1, 김○○

- 항만안에서 영리 목적으로 준설선과 육지간에 연락을 중계하는 영업행위가 「항만운송사업법」 위반인지 여부



- 통선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준설선과 육지간의 중계를 하는 영업행위가 위법인지 여부

[회신]

☞ '09. 1. 29, 항만유통과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용역업의 통선업은 항만안에서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규정에 따라 본선과 육지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선박이 항만을 입출항하는 과정에서 부두시설에 접안하지 못하여 해상에 정박중인 본선 선원 및 문서 등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함
- 「선박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동법 제26조제7호에서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은 제외하고 있으며
 - 통상, 준설선(펌프식·바켓식·딛퍼식 또는 그레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의 범위에 해당됨
- 따라서, 준설선인 경우에 건설기계에 탑승하고 있는 종사자는 작업인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들을 육상으로 운송하는 행위는 항만용역업(통선업)의 사업내용에 적합하지 않음
 - 이에, 타인의 수요에 따른 준설선과 육지간 영업행위에 대해 「항만운송사업법」을 적용하여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⑧

기타선(통선)으로 선착장에서 준설선까지 공사인부 수송 시 통선업 등록 필요 여부

[질의]

☒ '09. 5. 26, 소방방재청

- 기타선(통선) 소유자가 해상공사 준설업체와 임대계약하여 선착장에서 해상의 준설선까지 공사인부들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용역업(통선업)의 등록 대상인지 여부

[회신]

☒ '09. 5. 28, 항만운영과-165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용역업의 사업내용은 항만안에서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본선과 육지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가 포함됨
 - 이는, 일반적으로 선박이 항만을 입출항하는 과정에서 부두시설에 접안하지 못하여 해상에 정박중인 상황에서 선원 및 문서 등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함
 - 이 경우,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라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의 종류를 말하며, 동법 제26조제7호에서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은 선박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 * 준설선(펌프식·바켓식·딛퍼식 또는 그레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의 범위에 해당됨
- 따라서, 육상에서 해상의 준설선(건설기계)으로 작업인부를 운송하고자 하는 행위는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용역업의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⑨ 항만운송관련사업의 「항만운송사업법」 적용 여부 등

[질의]

✧ '10. 7. 26, 부산항만산업협회

-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별로 항만요율을 정부의 인가 또는 신고요금으로 적용 가능 여부
-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 자율화로 과당경쟁 및 항만요율 덤핑으로 항만운송질서를 위반할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관련 처벌 규정의 재개정 여부
- 부산항 화물고정업에 조사하는 부산항운노동조합원(항업근로자)들도 신청의 경우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항운노조상용화) 가능 여부

[회신]

✧ '10. 8. 12, 항만운영과-2911

-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별 항만요율은 항만운송사업과는 달리 정부의 규제완화와 민간의 경쟁력 제고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해 등록 또는 신고업체의 협정요율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가 또는 신고요금의 적용대상이 아님.
-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와 민간부분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협정요율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당경쟁 및 항만요율 덤핑으로 항만운송질서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규정을 재개정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관련업계의 자율적인 개선노력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 따른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의 당사자로 정한 항만운송사업자 등에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자로 등록한 자도 포함되어 있으며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항운노동조합, 항만운송사업자등 및 정부 사이의 합의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음.

⑩

통선으로 방파제공사 바지선과 육지간의 연락 중계 가능 여부

[질의]

12. 7. 26, 춘천지검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중 본선의 범위에 항만 내에서 방파제공사를 위한 바지선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12. 8. 3, 항만운영과-2498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용역업의 사업내용에는 선박이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의한 무역항만(노화도항 포함) 등을 입출항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입출항 선박이 부두시설에 접안하지 못하여 해상에 정박중인 상황에서 선원 및 문서 등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항만내에서 방파제공사를 위해 사용되는 바지선의 경우에는 본선에 해당되지 않음

⑪

대표자 변경 시 상호 변경이 없다면 등록증 변경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12. 10. 9, 제주특별자치도

- 개인사업체의 상호 변경이 없다면 대표자변경을 인정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항



만용역업) 등록증 변경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동 사업체는 부두에 설치된 급수 시설을 사용허가 받아 급수선을 확보하지 않고 시설기준 등의 확보기준을 완화 적용받고 있음)

[회신]

☒ '12. 10. 26, 항만운영과-3159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4(권리·의무의 승계)에 의하면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인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포괄적 양도를 하는 때에 대표자변경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등록증 변경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정당한 권리의무 승계자임이 인정된 경우 항만운송관련사업등록증을 변경 교부하여야 할 것임

⑫

항만용역업 등록업체가 용역비를 지불하고 미등록 물품공급업 신고업체에게 업무 대행 가능 여부

[질의]

☒ '13. 1. 23, 포항해양경찰서

- 항만용역업 등록업체가 용역비를 항만용역업에 미 등록된 물품공급업 신고업체에 제공하고 자신들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이 경우 화물고정업무로 인해 발생된 소득에 대한 세금납부를 항만용역업체가 부담하는 경우 위와 같은 형태로 물품공급업 신고업체를 통해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13. 1. 24, 항만운영과-380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에 의하면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업종별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6조의4에 따라 기존 항만용역업자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존 등록업자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따라서, 기존 등록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등록사항의 일부라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등록관청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 한 기존 등록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나, 동 사안의 경우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 제26조의3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경우라 할 것임
- 세금납부 주체와 관계없이 물품공급업 신고업체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항만용역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항만용역업의 일부업무인 화물고정행위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30조(벌칙)제2호 및 제33조(양벌규정)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⑬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업체가 등록 외 장비로
사업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 '13. 1. 18, 울산지방청

-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된 장비 외의 장비로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 등록된 장비 외의 장비로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경우 등록장비 외의 장비에 대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6 비고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이 적용되는지
-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6 비고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등록도 하지 않은 장비로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수행하였을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제33조의 “등록사항을 위반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회신]

☞ '13. 1. 24, 항만운영과-381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에 의하면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업종별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6 비고 제2호 및 제3호에서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항만용역업(통선업)을 등록한 자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등록 장비 외의 장비(통선)로 동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항만운송업무처리지침」 제13조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조치 후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임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6 비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가 장비라 하더라도 위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
- 항만용역업(통선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사항의 일부라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나, 등록사항 변경조치 없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선령 30년 이상 선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이므로 법 제31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 제26조의3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위반한 것임
 - 따라서, 동 사안은 「항만운송사업법」 제33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에 관하여 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됨

⑭

항만용역업의 등록기준 이외 분야에 대한 제한 가능 여부 등

[질의]

☒ '13. 9. 이○○

- 항만운송사업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외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분야에 대한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 항만용역업 중 줄잡이업무에 사용될 장비의 기준(통선 10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것이 재량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13. 10. 1, 항만운영과-2264

- 첫 번째 질의와 관련,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29조(권한등의 위임 위탁)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별표6에 의하면 울산항에서 항만용역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1억 원과 통선 20톤 이상, 급수선 50톤 이상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다만, 별표 6(비고 7호 마목)에 의하면 항만의 특성 또는 업종별 수급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통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해당업종의 시설 등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이 완화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완화 시행 공고(제2007-59호, '08.1.1.시행)」시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울산항 통선 수요와 울산항 특성 등을 감안하여 줄잡이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선박 보유기준을 통선 10톤 이상으로 적용한 것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등록기준 외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분야에 대한 제한을 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두 번째 질의와 관련,
 - 항만용역업은 통선업, 경비업, 줄잡이업 및 선박청소 행위 등의 업무를 종합 수행하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한 종류임
 - 항만운송사업법령에 따른 항만용역업의 등록기준(별표 6)은 상기 행위를 전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 것이며, 등록기준 중 통선은 본선과 육지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줄잡이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등 항만용역 업무 수행 시 작업선 등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등록기준으로 정한 것임
 - 따라서,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항만용역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줄잡이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만을 수행하는 경우 선박 보유기준을 통선 10톤 이상으로 정한 것은 선박 보유기준을 오히려 완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돌핀 부두·원유부이 등이 해상에 설치되어 있는 울산항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재량행위의 일탈이라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⑮

통선을 이용한 공공시설물 등 점검·보수인원 수송 가능 여부

[질의]

 '13. 10. 10, 해양경찰청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의3에 따라 항만용역업으로 등록된 통선을 해상에 존재

하는 공공시설물 또는 공익의 목적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 점검·보수 인원 수송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

[회신]

☒ '13. 10, 항만운영과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규정에 의하면 항만용역업 장비로 등록된 통선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하는 무역항 등 항만에서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본선과 육지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원 및 문서 등을 운반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항만운송사업법령에서는 통선을 상기 용도 외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명시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16

어장관리선으로 통선이 사용가능한지 여부

[질의]

☒ '14. 5. 23, 고○○

- 어장관리선과 통선이 다른지, 아니면 어장관리선이 통선으로 사용가능한지

[회신]

☒ '14. 6. 2, 항만운영과

- ‘통선’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용역업 중 ‘본선(本船)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목적으로 이용되는 선박을 말하며, 항만 내에서 항만용역업(통선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6조의3(사업의 등록)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함



- ‘어장관리선’은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라 어업권자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 중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선박을 말함
- 따라서, ‘어장관리선’은 ‘통선’과 운영목적 및 관리 법령이 서로 다른 선박이므로, ‘어장관리선’을 ‘통선업’의 영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용역업 및 장비 등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어장관리선’의 종류, 구조 등이 통선 용도로 등록 가능한지에 대한 기타 법률적인 추가적인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7

급유선 또는 급수선이 없어도 항만용역업 영위 가능 여부

[질의]

☒ '14. 6. 3, 강○○

- 항만용역업 완화 규정에 의하면 부두에 설치되어 있는 급유 또는 급수 시설인 경우 급유선 또는 급수선이 없어도 항만용역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요청

[회신]

☒ '14. 6. 12, 항만운영과

- 귀하가 무역항 내에서 음용수 공급 등의 행위를 하려고 할 시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인 항만용역업(급수업 포함)의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시·도지사)에 등록하여야 함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별표 6]에는 항만별 여건을 고려하여 관할 지

방해양항만청(시·도지사)이 등록 기준 완화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세부적인 등록 기준 완화 내용은 사업예정지의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시·도지사)에 문의 필요)

18

통선으로 작업인부나 물자 등 운송 가능 여부

[질의]

☒ '14. 7. 4, 서○○

- 통선으로 등록된 소형선박으로 해상의 준설공사작업선 및 축조중인 방파제 등으로 인부나 물자를 운송 할 수 있는지? 불가하다면 어떤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회신]

☒ '14. 7. 23, 항만운영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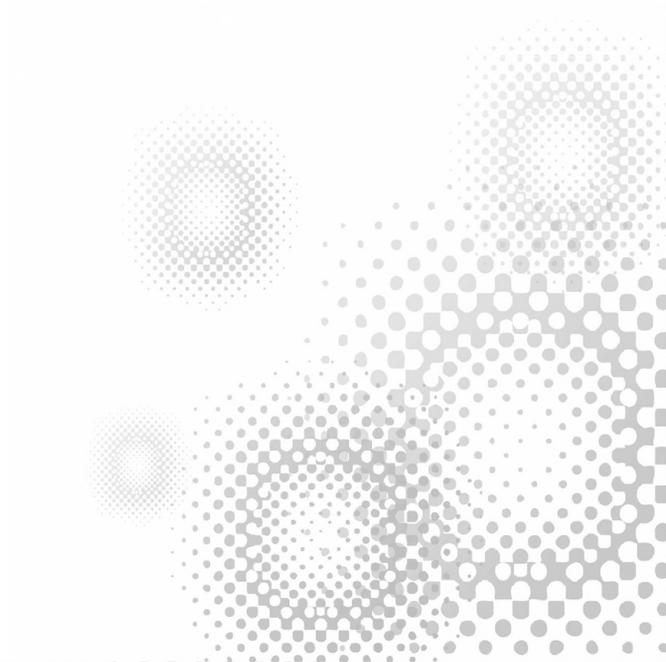
- 통선업의 사업내용은 무역항 등에서 “본선(本船)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입출항 선박이 부두시설에 접안하지 못하여 해상에 정박중인 상황에서 선원 및 문서 등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민원 사례의 경우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용역업 상 통선으로 등록된 선박으로는 인부나 물자 운송을 수행 할 수 없음
- 다만,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동 건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선(渡船)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법령을 관할하고 있는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문의가 필요



제2장

선박금융업

2022. 11



①

타 업체의 급유장비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선박으로 선박급유 가능 여부

[질의]

☞ '06. 1. 5, ○○급유

-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급유업자가 동일할 경우 내항화물운송사업 및 선박급유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항만운송사업법」에는 1년 이상 사업수행 실적이 없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실적은 등록장비의 실적인지 아니면 업체의 실적인지 명확한 구분과 등록장비로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 등록장비 외 선박으로 급유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타 업체의 급유장비 및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선박으로 급유행위가 가능

[회신]

☞ '07. 1. 5, 항만운영과

-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급유업자가 동일한 경우 급유서비스를 받는 항만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두 업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단, 이 경우 선박급유용 장비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은 선박급유 목적의 내항 화물운송만 가능함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에 기술된 사업실적이라 함은 동 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 수행주체(사업자)의 실적을 의미하며, 등록된 장비만으로 사업을 수행하라는 것은 아님
- 「항만운송사업법」의 선박급유업 등록기준은 사업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구비요건으로 등록장비 외 다른 장비로 사업이 가능하며, 타 업체의 급유장비 등 사용 여부에 관한 별도의 규제는 없음

② 등록장비는 해당 항만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

[질의]

☒ '07. 3. 21, ○○상사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급유업 등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하므로 해당 등록장비(급유선 등)는 그 항만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
- 금번 사업장 소재지가 여수항인 사업자가 목포항에 한번도 입항한 적이 없는 부산선적의 유조선을 전용임대하여 서류상으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급유업 등록한 후 육상의 탱크로리로 영업을 한 행위가 「항만운송사업법」상 적법한지 여부

[회신]

☒ '07. 3. 30, 항만운영팀-557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서 항만별로 등록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당해 항만으로 한정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위 한정된 사업범위를 준수함과 아울러 「선박안전법」 등 다른 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등록된 장비(급유선)의 이동까지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음
- 1년 이상 전용임대한 급유선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정한 선박급유업 등록기준 장비에 해당됨
 - 다만, 등록된 급유선이 사업구역을 벗어나 부산항 등 타 항에서 선박급유를 할 경우에는 위 법 관계규정에 정한 처벌대상이 됨
 - 아울러 선박급유업 사업자가 육상의 유조차량(탱크로리)로 접안급유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항만을 관리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항만운영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항만운송사업법」상 이를 특별히 제한할 근거는 없음



③ 육상 이동 주유차를 이용한 항만내 연료유 공급

[질의]

☞ '07. 5. 8, 제주해양경찰서

- 「선박법」상 등록된 부선에 일반 육상주유소에서 이동주유차를 이용 개항에 계류된 부선의 발전기용 연료유를 공급하였을 경우 선박급유업 해당여부
- 주유소 이동용주유차가 개항에 계류된 「선박법」상 등록된 부선에 연료공급용 호스를 직접 연결하여 급유시 선박급유업 영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선박법」상 등록된 부선에 적재된 연료탱크를 육상(항계내 계류장)에 내려 놓고 주유차량이 급유호스를 연결 공급 후 연료탱크를 부선에 적재하였을 경우 선박급유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07. 5. 10, 항만운영팀-798

-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급유업은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부선의 발전기가 작업상 단순 탑재된 설비라면 이에 공급되는 연료유는 선박용 연료유라 보기 어려우므로 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급유업 등록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 「선박법」 제1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선은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으로 정의
- 부선을 운항하기 위하여 연료유를 공급하였다면 선박급유업을 등록하여 급유를 해야 하나, 첫 번째 질의와 같은 경우라면 「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급유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부선은 항행능력이 없어 선박 운항용 연료탱크가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보이며, 첫 번째 질의와 같이 발전기용 연료탱크에 연료유를 공급하였을 경우에는 선박급유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④

선박급유업의 등록기준

[질의]

☒ '08. 4. 30, 인천지방법원

- 선박급유업 등록기준은
- 선박용 연료유가 따로 있는지
- 만약 선박용 연료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모든 연료에 대하여 등록이 가능한지

[회신]

☒ '08. 5. 15, 항만유통과-590

- 등록기준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별표6에서 규정하고 있음. 다만, 동 별표6 비고 제5호에 따라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시설 등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 항만운송사업법령에서는 선박용 연료유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선박급유업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규정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하나의 사업 종류로서 등록하는 것이며 선박에 공급하는 연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등록하지 않음

⑤

탱크로리를 이용한 선박연료유 공급 가능 여부

[질의]

☒ '08. 8, 박○○

- 육상 탱크로리를 이용한 선박용 연료유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08. 9. 1, 항만유통과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무역항 및 지정항만에서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의3에 따라 항만별로 ‘선박급유업’에 등록하고 연료유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선박 연료유 공급장소가 무역항(울산항)인 곳에서 급유선 외의 다른 수단으로 즉, 귀하가 문의하신 것처럼 육상 탱크로리를 통해 연료유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선박급유업’에 등록하고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여야 함

⑥ 유조차량을 이용한 선박급유의 적법성 여부

[질의]

✖ '08. 10, 서○○

- 육상 유조차량을 이용한 선박급유업의 적법성 여부

[회신]

✖ '08. 10. 23, 항만유통과

- 선박급유업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하나의 사업으로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함
- 또한, 인천항의 선박급유업 등록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자본금 1억 원 이상과 총톤수 100톤 이상의 급유선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구비요건으로 등록장비 외 다른 장비로 사업이 가능할 것임
- 따라서, 인천항에서 선박급유업을 등록하고 육상 유조차량 등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였다면 적법하다고 할 것임

⑦

운할유의 제품적 성격과 탱크로리로 급유 가능 여부

[질의]

☒ '08. 10. 28, 울산해양경찰서

- 「항만운송사업법」상 운할유가 선박급유업의 석유제품인지 물품공급업의 물품인지 여부
- 석유제품이면 선박급유업 장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는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선박급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물품이면 어떠한 항만운송사업허가로 있어야 하는지, 또한 선박급유업 허가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선박급유업 관련 귀청 내부지침을 보면 “유조차량의 경우 선박급유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 중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허용”이 뜻하는 범위 등 허용범위

[회신]

☒ '08. 11. 11, 항만유통과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선박급유업은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이고, 물품공급업은 선박운항에 필요한 물품 및 주·부식의 공급과 선박의 침구류 등을 세탁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의 종류나 유형에 따라 구분하고 있지 않아 그 사업내용의 구체적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판단하여야 할 것임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선박급유업 장비등록 기준(급유선 총톤수 100톤 이상)은 울산항에서 등록유지 및 사업영위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등록된 장비 외 탱크로리 등 다른 장비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함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물품인 경우 물품공급업에 등록하여야 하고, 선박연료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선박급유업에 등록하여야 할 것임
- 급유당시의 항만 여건에 맞추어 지방해양관청에서 관련 업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허용함을 말하며 획일적으로 그 범위를 정할 수는 없음

⑧

자사선박에 연료유 공급 시 선박급유업 등록 필요 여부

[질의]

✧ '08. 12. 5, 해양경찰청

- 정유사가 자사(또는 전용임대)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경우,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선박급유업에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 '08. 12. 11, 항만유통과-848

- 선박급유업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무역항에서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항만별로 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하고 그 사업을 영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정유회사는 동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무역항에서 선박에 화물을 양하 또는 적하하기 위해 항만하역사업에 등록하고,
 - 위험물의 안전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개항질서법」 제22조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 계획의 일환으로 소형 방제선을 직접 배치하여 하역작업의 지원, 순찰, 방제 등 안전관리와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따라서, 정유사가 자사(또는 전용임대) 방제선에 대한 원료유 공급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수요에 응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항만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임

⑨

선박급유업을 등록한 타 업체를 통한 선박연료유 공급 가능 여부

[질의]

☞ '09. 3. 정○○

- 해상 유류 판매시 「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급유업 등록이 필요한지와 등록 없이 타 선박급유업 등록업체를 통한 대리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09. 3. 13, 항만유통과

- 항만에서 타인의 수요에 의하여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라 선박급유업에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도록 있음
- 따라서, 육상구역에서의 석유류 판매업 등록과 관계없이 항만에서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별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춰 선박급유업에 등록한 후 사업을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선박급유업 등록 없이 선박급유업을 등록한 타 업체를 통해 직접 연료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항만운송사업법」 제30조제2호에 따라 벌금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음



⑩

임차한 탱크로리를 이용한 선박급유 가능 여부

[질의]

* '09. 4. 성○○

- 임차한 육상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선박급유를 하는 경우, 「항만운송사업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신]

* '09. 4. 10, 항만유통과

- 항만에서 타인에게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 즉 선박급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라 일정기준을 갖추어 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하여야 함
- 인천항의 경우, 선박급유업 등록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자본금 1억 원 이상과 총톤수 100톤 이상의 급유선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구비요건으로 등록 장비 외 다른 장비로 사업이 가능할 것임
- 따라서, 귀하가 인천항에서 선박급유업에 등록하고 타인으로부터 육상 탱크로리 차량 등을 임차하여 선박용 연료유를 직접 수요자에게 공급하였다면 적법하다고 할 것임

①

선박급유업체가 타 지역에서 연료유 수급 후
영업구역내에서 판매 가능 여부

[질의]

☒ '09. 6. 1, 통영해양경찰서

- 선박급유업체가 영업구역을 벗어나 타 지역에 있는 저유소에서 연료유를 수급 받은 후, 영업구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한 업무질의

[회신]

☒ '09. 6. 3, 항만운영과-212

- 선박급유업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 각 호 및 제26조의3에 따른 무역항, 지정항만에서 항만별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범위에서만 당해 법률을 적용받고 있음
- 따라서, 동법에 따른 선박급유업체가 사업(영업)구역을 벗어난 저유소에서 연료유를 공급받은 후, 사업구역내에서 선박에 공급(판매)하는 것은 「항만운송사업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가능하다고 할 것임
- 다만, 선박급유업체의 급유선이 사업구역 밖 저유소에서 사업구역내에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해운법」에 의한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여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⑫

선박급유업 등록을 하고 계약을 맺은 탱크로리로 선박급유 가능 여부

[질의]

✱ '12. 4. 24, 해양경찰청

- ① 「항만운송사업법」 상 선박급유업을 등록한 업체가 주유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소형선박에 급유하는 경우 탱크로리는 등록대상이나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선박급유가 가능한지 여부 및 근거
- ② 위 ①항이 가능하다면 탱크로리를 임차하여 선박에 급유 시 위법사항 여부 및 기타 참고사항

[회신]

✱ '12. 4. 30, 항만운영과-1438

- ① 선박급유업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하나의 사업으로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선박급유업 등록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자본금 1억원 이상과 총톤수 100톤 이상의 급유선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구비요건으로 등록장비 외 다른 급유장비로 사업이 가능할 것임
- ② 따라서, 무역항에 선박급유업을 등록한 자가 당해 항만에서 육상 탱크로리 차량 등을 임차하여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였다면 「항만운송사업법」 상 적법하다고 할 것임

13

선박급유업자가 운송업자와 계약을 맺어 차량에 의한 유류수송 위탁 가능 여부

[질의]

☒ '12. 5, 허○○

- 선박급유업 등록업체가 유류수송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위탁하는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저촉 여부

[회신]

☒ '09. 6. 1, 항만운영과

-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항만에서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별표6)에 따라 선박급유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선박급유업체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간 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선박급유 행위를 수행할 수 없음
-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유류를 항만까지 운송할 수는 있으나, 항만에서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주체는 반드시 선박급유업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함



⑭

선박급유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탁에 의한 탱크로리로 선박급유 가능 여부

[질의]

☒ '12. 5. 30, 정○○

- 선박급유업 등록업체가 유류수송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위탁하는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저촉 여부
-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유류를 운송하도록 위탁하는 경우 바지선 및 함정에 유류를 공급하는 주체는 선박급유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운송사업자가 되며, 이 경우에 운송사업자가 선박급유업 면허를 임차하여 바지선 및 함정에 공급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유사한 행위가 되어 「항만운송사업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신]

☒ '12. 6. 5, 항만운영과-1882

-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항만에서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별표6)에 따라 선박급유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선박급유업체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간 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선박급유 행위를 수행할 수 없음
-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유류를 항만까지 운송할 수는 있으나, 항만에서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주체는 반드시 선박급유업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함

⑮

탱크로리를 이용한 선박용 연료유 공급 가능 여부

[질의]

☒ '12. 9, 이○○

- 항만내에서 육상 탱크로리(차량)를 이용한 선박용 연료유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무역항 외)

[회신]

☒ '12. 9. 12, 항만운영과

-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항만에서 선박급유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선박급유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항만관리청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선박급유업자가 육상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지정된 항만에서 선박급유업을 영위할 수 있음
- 법 제2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지정하는 항만은 「항만법 시행령」 별표1의 무역항을 말함. 또한, 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은 전라남도 노화도항을 말함. 그 밖에 「항만법」 제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만시설도 항만으로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무역항외라 하더라도 지방청장이 항만시설로 별도 지정고시한 시설인지 관할 항만관리청(지방해양항만청, 시·도)에 확인이 필요함
- 아울러, 선박급유업을 등록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항만에서 육상탱크로리(차량)로 선박급유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항만의 여건에 따라 관할 항만관리청에서 육상탱크로리(차량)에 의한 선박급유 행위와 위험물 항내 반입을 제한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항만관리청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⑩

정박 중인 선박에 탱크로리로 운할유 공급 시 「항만운송사업법」 등록대상 여부

[질의]

☞ '13. 2. 5, 이○○

- 항만에 정박중인 선박에 탱크로리로 운할유(엔진오일) 20,000 l 를 공급하는 행위가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등록대상인지?

[회신]

☞ '13. 2. 7, 항만운영과-544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의하면 ‘물품공급업’이란 “선박 운항에 필요한 물품 및 주·부식의 공급과 선박의 침구류를 세탁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 사업은 같은 법 제2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의하면 ‘선박급유업’이란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선박급유업’은 선박의 운항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동 사업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같은 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항만(항만시설)에서 선박 운항에 필요한 운할유를 탱크로리로 해당 선박에 공급하는 행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선박운항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물품공급업)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사업에 해당됨

17

선박급유업 최초 등록 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

[질의]

☞ '13. 8. 6, 손○○

- 선박급유업 변경등록과 관련한 법규가 있는지? 선박급유업으로 최초 등록한 사항(선박종류, 선박용량, 소유주 등)이 변경될 경우 해양항만청에 변경등록을 해야하는지?

[회신]

☞ '13. 8. 8, 항만운영과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한 종류인 선박급유업 등록 후 등록장비 대체, 소유자 변경 등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된 경우에는 등록관청(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지자체)에서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제13조에 따라 등록관청에 등록사항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18

바지선에 탱크로리를 탑재하여 운할유 공급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 '14. 6. 26, 박○○

- 건조 선박 운할유 수급 작업 관련하여 TANK LORRY 차량을 해상 바지선에 탑재하여 작업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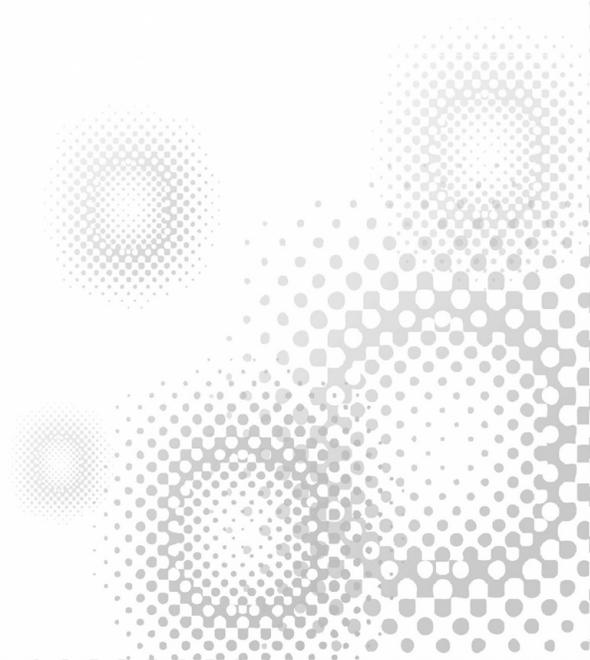
[회신]

 '14. 7. 4, 항만운영과

- 해상 바지선에 TANK LORRY 차량을 탑재한 후 건조 선박에 윤활유를 공급하는 행위는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선박운항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법 제26조의3 규정에 따른 ‘물품공급업’ 신고가 필요함
- 이와는 별도로, 선박에 화물로 윤활유를 싣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개항질서법」 제22조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항만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배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제3장

물품공급업 및 컨테이너 수리업



①

단순히 차량을 이용하여 정박 중인 선박에 물건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

[질의]

☒ '09. 6. 1, 부산해양경찰서

- 항만운송관련 사업이 선박을 이용한 용달업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바, 단순히 차량을 이용하여 정박중인 선박에 물건을 공급하는 것이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 장갑 등 위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의류, 피복, 부식류와 같이 취급을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 '09. 6. 3, 항만운영과-213

- 물품공급업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12조에 따라 자동차 1대 이상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지방해양항만청에 신고하여 사업을 영위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운항에 필요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것은 당해 법률에 적합하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음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호 규정에는 물품공급업의 사업 내용에 대하여만 명시하고 있고, 위생 문제 등 취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②

물품공급업 영위 관련 법령위반 여부

[질의]

☞ '09. 10, 김○○

- 물품공급업 관련 「항만운송사업법」 위반여부 질의

[회신]

☞ '09. 11. 2, 항만운영과

- 물품공급업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항만구역을 통과하여 선박 앞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행위가 「항만운송사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 ‘물품공급업’이란 “선박 운항에 필요한 물품 및 주·부식의 공급과 선박의 침구류를 세탁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 선박운항에 필요한 물품을 선박 앞까지 단순히 운반만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물품공급업’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됨
- 물품공급업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개인용달차를 이용하여 ‘선박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가 「항만운송사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물품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 신고해야 하는 바,
 - 물품공급업을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직접 공급한 업체의 행위에 대한 「항만운송사업법」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공급계약 등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③ 육상에서 ‘컨’ 화물 고정작업을 하는 경우 등록 여부

[질의]

✱ '13. 7. 10, 부산지방청

- 육상(보세창고 등)에서 컨테이너 내 화물을 고정하는 업체(속칭 “쇼링업체”)의 경우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관할 해양항만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 '13. 7. 18, 항만운영과-1299

-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에 의하면 “항만”이란 무역항, 노화도항, 기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만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의하면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등으로 정하고 있음
- 또한, 항만용역업 중 세부 사업내용의 하나인 “화물고정” 사업은 선체동요로 인한 화물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선박의 화물에 대한 고정작업을 수행하는 행위를 의미함
- 따라서, 화주의 필요에 의하여 항만구역이 아닌 육상(보세창고 등)에서 컨테이너 내 화물을 고정하는 사업은 항만에서 선박에 역무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으로 볼 수 없어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의한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대상이 아님
 - 아울러, 컨테이너 내장화물에 대한 고정작업이 항만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선박에 역무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볼 수 없고 선박의 화물 고정행위가 아니므로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의한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대상이 아님

④

물품공급업자가 내·외국 외항선원을 유·무상으로 항만 밖으로 수송 가능 여부

[질의]

☒ '14. 3. 28, 차○○

- 물품공급업자가 항만 내 정박중인 선박의 내·외국 외항선원을 유·무상으로 항만 밖으로 수송 가능 여부?

[회신]

☒ '14. 4. 7, 항만운영과

- 「해운법」 제2조에 의하면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사업을 “해운대리점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 해운대리점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승무원 상륙 허가절차 등 업무는 해운대리점이 선주를 대리하고 통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해운대리점업을 수행하지 않는 자일지라도 상기 절차가 모두 완료된 선원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입이 허가된 차량, 인원으로 수송하는 경우라면 항만출입은 가능할 것임



• 항만시설 사용 및 항만운송사업 질의회신 사례집 •

[부록]
대법원 판례



①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누8171 판결

[판시사항]

- [1] 항만부지가 구 항만법상의 항만시설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허가사용 용도에 제한이 따르는지 여부(소극)
- [2] 행정청이 착오로 항만시설 사용료를 구 항만시설사용규칙에 정한 것보다 미달되게 징수해 온 경우, 사용허가기간 경과 후에 그 차액을 추가 부과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

[판결요지]

- [1] 항만부지는 그 사용료에 대하여 구 항만시설사용규칙(1993. 12. 4. 교통부령 제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6. 1. 25. 건설교통부령 제47호로 폐지)에 따라 정함이 없어 같은 규칙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소정의 사용료가 징수된다는 것일 뿐 그것이 구 항만법(1995. 1. 5. 법률 제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항만시설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그 허가사용의 용도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화물보관·처리시설이 아닌 항만부지를 야적장의 용도로 사용허가를 하고 야적장 전용사용료를 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료 징수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허가처분 자체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항만시설을 사용허가함에 있어 그 사용료를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였다면 당해 사용료가 착오로 구 항만시설사용규칙 제14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한 금액보다 저렴하게 정하여졌다 하더라도 그 허가사용자가 사용허가에서 정해진 바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허가사용기간이 모두 경과한 이상 착오로 인한 사용료 산정이었다는 이유로 그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사용료를 일정한 금액으로 정함이 없이 구 항만시설사용규칙 등 관계 법령에



저한 바에 따른다는 형식으로 정한 경우라면 사용료를 잘못 산정함으로 인하여 구 항만시설사용규칙 제14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되게 징수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당초의 허가내용에 반한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② 대법원 1996. 1. 23. 선고 96누6786 판결

[판시사항]

개별 화주의 대리인에 불과한 항만하역사업자에게 부두장치장 사용료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항만시설사용료(체화료)의 징수대상이 되는 항만시설(화물의 보관·처리시설)의 용지는 각 해당 화주이고, 항만하역업자가 화물의 실질적인 처분권자인 개별 화주의 수요에 응하여 그들을 대리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절차를 행하면서 요금 및 수수료 등을 받아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항만시설의 사용으로 인한 편익 역시 화물의 처분권자인 화주가 누리고 있는 것이므로 그 대가인 사용료 역시 그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구 항만법(1993. 8. 5. 법률 제 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가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항만하역사업자가 화주를 대리하여 화물장치료 징수대상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항만하역업자가 화주를 대리하여 당해 화물장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항만시설사용규칙(1993. 12. 4. 교통부령 제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의 규정은,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항만하역사업자가 각 화주들로부터 장치장 사용료를 받아 그들을 대리하여 해운항만청에 납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개별화주의 대리인에 불과한 항만하역사업자에게 부두 장치장 사용료의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③ 대법원 1996. 1. 26. 선고 96누1590 판결

[판시사항]

- [1] 구 항만시설사용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한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의 주체
- [2] 구 항만시설사용규칙 제16조 제1항의 취지
- [3] 개별 화주의 대리인에 불과한 항만하역사업자에게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 [1] “구 항만법(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물장치료 징수대상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은 당해 화물을 하역하는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하역사업자가 화주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항만시설사용규칙(1993. 12. 4. 교통부령 제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개별 화주이나 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항만하역사업자가 화주를 대리하여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 구 항만법 제27조가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항만하역사업자가 제7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장치료 징수대상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항만하역사업자가 화주를 대리하여 당해 화물장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항만시설사용규칙 제16조 제1항은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항만하역사업자가 각 화주들로부터 장치장 사용료를 받아 그들을 대리하여 관리청에 화물장치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제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3] 화물장치료의 징수대상이 되는 항만시설의 사용자는 각 해당 화주이고, 항만하역사업자들이 화물의 실질적인 처분권자인 개별 화주의 수요에 응하여 그들을 대리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절차를 행하면서 요금 및 수수료 등을 받아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항만시설의 사용으로 인한 편익은 화물의 처분권자인 화주가 누리고 있는 것이므로 그 대가인 사용료 역시 그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④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두3068 판결

[판시사항]

항만하역사업자가 개별 화주를 대리하여 화물장치료 징수대상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제7조 제1항 후단이 1996. 7. 4. 해운항만청고시 제1996-25호로 개정되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항만하역사업자가 화주를 대리하여 위 사용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개별 화주를 대리하여 위 사용허가신청을 하고 수익을 얻는 항만하역사업자에게 항만시설사용료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만하역사업자가 수입화물의 화주가 아니라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항만하역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하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입화물을 선박에서 양하하여 화물장치료 징수대상 시설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부두시설을 사용할 뿐이고, 일단 수입화물이 화물장치료 징수대상 시설에 반입된 후에는 화주가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화주가 수입면허를 받아야만 이를 반출할 수 있어 항만하역사업자로서는 화주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한 당해 화물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과거부터 항만하역사업자가 개별화주를 대리하여 화물장치료의 징수대상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을 하여 왔고, 비록 “화물장치료 징수대상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은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하역사업자가 당해 화물의 화주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개정 전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제7조 제1항 후단이 1996. 7. 4. 해운항만청고시 제1996-25호로 개정되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명문의 금지규정이 없고, 성질상 대리가 허용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여전히 항만하역사업자는 화주를 대리하여 위 사용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항만하역사업자는 무역항에서 항만하역사업을 영위하면서 계속적으로 관리청과 이러한 거래관계를 맺어 왔고 관리청으로서도 항만하역사업자가 개별 화주를 대리하여 일괄하여 항만하역사업자의 명의로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을 하는 것으로 각 해당 화주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었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화물장치료의 징수대상이 되는 항만시설의 사용자는 각 해당 화주이고,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의 실질적인 처분권자인 개별 화주의 수요에 따라서 화주를 대리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절차를 밟으면서 요금 및 수수료 등의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항만시설의 사용으로 인한 편익은 화물의 처분권자인 화주가 누리는 것이므로 그 대가인 사용료 역시 화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디56313 판결

[판시사항]

- [1]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그 산하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는지 여부(소극)
- [2] 항운노동조합이 신체장애로 인하여 하역 작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소속 조합원을 하역 작업에 배치하지 아니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3] 항운노동조합이 신체장애로 인하여 하역 작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소속 조합원을 하역 작업에 배치하지 아니한 것이 수령지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1]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그 산하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 기타 어떠한 직접적인 계약법·단체법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2]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에 가입하거나 등록함으로써 조합과 사이에 조합의 지시·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조합이 신체장애로 인하여 하역 작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조합원에 대하여 취로를 거절한 사실만으로 조합이 그 조합원을 해고하였다거나 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 [3] 조합원인 근로자가 중노동인 항만하역 작업에 종사할 수 없는 신체적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노무 제공의 현실적 수령자인 항만하역자 측에서 근로자의 노무 제공에 대하여 수령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 조합이 근로자를 취로시키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⑥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판시사항]

구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의 의미

[판결요지]

구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이라 함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선박의 운항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나아가 선박의 운항을 위한 용도와는 무관하게 단지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해석하거나 ‘단순한 보관 목적에서 육상용 기계의 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는 사업’에 까지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항만시설 사용 및 항만운송사업 질의회신집

발 행 처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발 행 일 : 2015년 1월

인쇄·디자인 : 크리커뮤니케이션
(T.02-2273-1775)

항만시설 사용 및 항만운송사업

질의회신집



〈일러두기〉

본 책자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 부에서 항만시설 사용 및 항만운송(관련)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회신한 주요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법령 개정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하므로 업무처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특정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현행 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